

2025

콜마홀딩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Kolmar**
HOLDINGS

○ 목차 ○

■ 최고경영자 및 자율준수 관리자 인사말 - pp. 1~2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개정 이력관리- p. 3

■ 본문

I. 들어가며 - p. 4 -----

1. 콜마홀딩스 CP - p. 5

1.1 조직도 - p. 5

1.2 자율준수프로그램 - pp. 5~6

1.3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 p. 7

1.4 부패방지정책 - pp. 7~10

1.5 운영성과(2024~2025년) - pp. 11~13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p. 14

2.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의 - p. 14

2.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성 - p. 14

3. 공정거래위원회 - p. 14

3.1 정의 - p. 14

3.2 기능 - p. 15

3.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 - p. 15

II. 업무관련 법령 - p. 16 -----

1. 「공정거래법」 - p. 17

1.1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 p. 18

1.1.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기업결합 - p. 18

1.1.2 정의 및 유형 - p. 19

1.1.3 기업결합 신고제도(회사→공정위 신고 단계) - p. 19

1.1.4 기업결합 심사제도(심사단계) - p. 20

1.1.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심결단계) - p. 20

1.1.6 관련 사례 - p. 21

1.1.7 Q&A - pp. 22~23

1.1.8 DO&DON'T - p. 24

1.1.9 법조문(「공정거래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 pp. 25~28

1.2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 p. 29

1.2.1 정의 및 유형 - pp. 29~30

- 1.2.2 범위반 시 제재 - p. 30
- 1.2.3 관련 사례 - pp. 31~32
- 1.2.4 Q&A - pp. 33
- 1.2.5 DO&DON'T - p. 34
- 1.2.6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p. 35
- 1.2.7 법조문(「공정거래법」 제4조~제6조) - p. 36
- 1.3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 p.37
 - 1.3.1 정의 및 유형 - pp. 37~40
 - 1.3.2 관련 사례 - pp. 41~42
 - 1.3.3 Q&A - p. 43
 - 1.3.4 DO&DON'T - p. 44
 - 1.3.5 법조문(「공정거래법」 제18~24조, 제26조~제28조) - pp. 45~51
- 1.4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 p. 52
 - 1.4.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부당지원행위 - pp. 52~53
 - 1.4.2 부당지원행위 정의 및 유형 - pp. 53~54
 - 1.4.3 범위반 시 제재 - p. 54
 - 1.4.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정의 및 유형 - p. 54~56
 - 1.4.5 범위반 시 제재 - p. 56
 - 1.4.6 [비교] 부당지원행위 v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 p. 57
 - 1.4.7 관련 사례 - p. 58~60
 - 1.4.8 Q&A - p. 61~62
 - 1.4.9 DO&DON'T - p. 63
 - 1.4.10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p. 64
 - 1.4.11 법조문(「공정거래법」 제45조, 제47조) - pp. 65~66
 - *「부당한 지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심사지침」 개정사항 - pp.66 ~102
- 1.5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 p. 103
 - 1.5.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부당공동행위 - pp. 103~104
 - 1.5.2 정의 및 유형 - pp. 104~105
 - 1.5.3 범위반 시 제재 - p. 105
 - 1.5.4 자진신고 감면 - p. 106
 - 1.5.5 관련 사례 - pp. 107~108
 - 1.5.6 Q&A - pp. 109~110
 - 1.5.7 DO&DON'T - pp. 111~112

- 1.5.8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pp. 113~114
- 1.5.9. 법조문(「공정거래법」 제40조) - p.115
- 1.6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 p. 116
 - 1.6.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불공정거래행위 - p. 116
 - 1.6.2 정의 및 유형 - pp. 117~118
 - 1.6.3 범위반 시 제재 - p. 118
 - 1.6.4 관련 사례 - pp. 119~120
 - 1.6.5 Q&A - pp. 121~122
 - 1.6.6 DO&DON'T - pp. 123~127
 - 1.6.7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pp. 128~131
 - 1.6.8. 법조문(「공정거래법」제45조) - p.132
- 2. 「하도급법」 - pp. 133~134
 - 2.1 「하도급법」 - p. 135
 - 2.1.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하도급법」 - p. 135
 - 2.1.2 주요 원사업자 의무사항 - pp. 135~137
 - 2.1.3 주요 원사업자 금지사항 - pp.137~141
 - 2.1.4 범위반 시 제재 - pp. 142~143
 - 2.1.5 관련 사례 - pp. 143~144
 - 2.1.6 Q&A - pp. 145~148
 - 2.1.7 DO&DON'T - pp. 149~154
 - 2.1.8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 pp. 155~157
 - 2.1.9 법조문(「하도급법」 제3조~제20조, 제22조) - pp. 158~173

III. 부록 - p. 174-----

-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 p. 175
 - 1.1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 - pp. 175~179
 - 1.2 위원회 심결제도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 pp. 179~183
- 2. 준법통제기준 - pp. 184~189
- 3.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pp. 189~195
- 4. 내부거래 관리 규정 - pp. 196~202
- 5. 부패방지정책 - pp. 203~205
- 6.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 pp. 205~206
- 7.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 pp. 206~211
- 8.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 pp. 211~213
- 9.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 - pp. 214~215

최고경영자 인사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활성화와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윤상현입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기업 스스로가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경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속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영은 고객과 파트너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CP는 법적 준수의 경계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에 영향을 줍니다.

콜마홀딩스는 2021년 CP강화를 선포한 이래 매년 ‘자율준수의 날’을 맞아 임직원 자율준수 서약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하는 등 준법·윤리경영의 체계 확립과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 콜마그룹은 「居安思危」(거안사위: “안정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면서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준법경영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콜마홀딩스는 공정거래 준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업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사전적 예방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례적으로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CP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를 개최하여 CP 관리체계 고도화와 ‘내부거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CP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다양한 CP교육으로 임직원 의식 내재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CP를 준수할 때 원칙을 지키며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경영의 원칙이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콜마홀딩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윤상현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CP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 소통 방식 등에 영향을 주는 조직문화”

안녕하십니까. 콜마홀딩스 자율준수관리자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은 고객의 신뢰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2021년 CP(자율준수 프로그램)를 도입하고 콜마그룹 내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통해 준법·윤리경영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의 자율준수관리자로서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임직원께서는 사업 관련 법령과 CP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준법·윤리경영의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 시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CP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담당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CP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준법·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CP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율준수편람의 적극적 활용과 연중 실시하는 다양한 CP교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CP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CP는 조직문화이고,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 소통의 방식 등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 됩니다.저는 CP가 우리회사에 내재화되고 함께 정진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마홀딩스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 김종철

I. 들어가며

- 1. 콜마홀딩스 CP**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3. 공정거래위원회**

I. 들어가며

1. 콜마홀딩스 CP

1.1 조직도



1.2 자율준수 프로그램

하나.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둘.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셋.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넷.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다섯.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여섯. 내부감시체계 구축

일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여덟.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I. 들어가며



- ✓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하여 업무에 적용하여야 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CP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 최고경영자는 소속 임직원, 일반 고객, 협력사 등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자율준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 ✓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는 CP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직접 논의가 가능한 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공정거래 법규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고,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 ✓ CP운동을 위한 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최고경영자 및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기업 내부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대해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여야 하며,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CP 관련 운영 실태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CP 개선에 반영하여, CP 운영의 지속성과

I. 들어가며

1.3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사람이 중심인 콜마홀딩스는 인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가치있는 삶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인간경영, 기술경영, 가치경영 및 책임경영이라는 기업이념을 실현하고 규범준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하나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어떠한 부패행위 및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셋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넷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지배기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갖는다.



다섯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여섯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규범 비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일곱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 부패방지정책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적용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①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I. 들어가며

예방하고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 「OECD 부패방지협약」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 ① “부패리스크”란 부패행위 및 부패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소를 말한다.
-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③ “비즈니스 관계자”란 회사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④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란 회사가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 ⑤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⑥ “주관부서”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22. 12. 26.>

제3조 적용 범위

- ① 본 정책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본 정책은 모든 사업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제4조 관리 및 점검

- ① 회사는 내부통제, 준법 프로그램이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되고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 ② 회사는 부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패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I. 들어가며

제5조 금품등의 제공

- ①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제안·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금품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 내 정해진 승인 및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며, 특정 금품등의 제공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등을 제공 또는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 정책 및 부패방지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다. 거절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메시지가 오해나 재고의 여지가 없도록 하며, 즉시 주관부서에 그러한 제공 또는 요청이 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6조 기부 및 협찬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름으로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부 또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나 정치적 기부 은폐를 목적으로 기부나 협찬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기부 및 협찬 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 비즈니스 관계자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사업체와의 거래를 피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비즈니스 관계자가 회사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명시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비즈니스관계자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면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주관부서는 부패리스크를 검토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6.>

제8조 장부와 기록

- ① 회사는 모든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실행 의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한다.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발견된 부패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사규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해당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I. 들어가며

제10조 신고 및 보복 금지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신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②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신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내부신고제도(V-GMP, 우편, 홈페이지 제보코너 등)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 ③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조치

임직원이 본 정책·사내 규정 또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책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책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정책은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개정 2022. 12. 26.>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I. 들어가며

1.5 운영성과(2024년~2025년)

2024	
1	콜마그룹 대졸 신입사원 입문교육(ESG/CP/사회공헌 등) 실시
2	UN WEPs(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
3	지속가능경영 Letter 「眞持(진지)」 제5호 발행 · 배포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인권경영체계 구축 보고 2024년 ISO 37001 & 37301 세부 추진계획 대표이사 승인
4	제5차 콜마그룹 ESG 실무협의체 개최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등 평가자료 제출 콜마그룹 인권정책 개정
5	제2회 자율준수의 날 개최
	임직원 규범준수 서약서 수취 및 전 부서 리스크 평가표 작성
6	지속가능경영 Letter 「眞持(진지)」 제6호 발행 · 배포
	제6차 CP위원회 개최 : CP운영규정 개정 및 상반기 주요 운영실적 보고 등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국문) 발간
	2024 상반기 서스틴베스트 평가 AA등급 획득
7	제6회 콜마그룹 ESG 실무협의체 개최
	2023 UNGC 10대 원칙 이행 보고서(CoP) 제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영문) 발간
8	CP등급평가 현장평가 실시
	ISO 37001 & 37301 내부심사 실시

I. 들어가며

2024	
9	지속가능경영 Letter 「眞持(진지)」 제7호 발행 · 배포
10	ISO 37001 & 37301 사후심사 실시 및 인증 유지
	제3회 Kolmar ESG 주간 'Connect for Green' 운영
	제7차 콜마그룹 ESG 실무협의체 개최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 종합 A등급 획득
11	콜마홀딩스 직원 대상 '지속가능경영의 이해' 교육 실시
	이사회 산하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2025년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보고
12	ISO 37001 & 37301 경영검토 보고
	2024년 하반기 서스틴베스트 평가 AA등급 획득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 내부거래 관리 규정 개정 등
	제7차 CP위원회 개최 :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규정 개정 등
12	콜마홀딩스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지속가능경영 Letter 「眞持(진지)」 제8호 발행 · 배포

2025	
1	내부거래 관리 규정(개정) 시행 및 공지
2	2025년 콜마그룹 신입사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진행
	계열회사 대상 '내부거래' 교육 진행(HK이노엔, 한국콜마)

I. 들어가며

2025	
3	CP등급평가 실적보고서 등 평가자료 제출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및 「내부거래 관리규정」 개정
4	지속가능경영 Letter 「眞持(진지)」 제9호 발행 · 배포
	2024년 ISO 37001 & 37301 세부 추진계획 대표이사 승인
	콜마그룹 ISO 37001 & 37301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 실시
	콜마홀딩스 인권영향평가 수행
5	전 임직원 대상 '규범준수 서약서' 징구
	제3차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 자회사 대상 예금담보 제공 관련
	제3회 자율준수의 날 개최
6	제8차 CP위원회 개최 : 통합 리스크 도출 프로세스 운영(안) 수립 및 업무 현황 등
	콜마홀딩스 전 부서 리스크 평가표 작성
	2025 상반기 서스틴베스트 평가 AA등급 획득
7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국문) 발간
	지속가능경영 Letter 「眞持(진지)」 제10호 발행 · 배포
	제4차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 자회사 대상 예금담보 제공 관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공시(국문 및 영문)
8	CP등급평가 대면평가 실시
	ISO 37001 & 37301 내부심사 실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영문) 발간

1. 들어가며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2.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을 의미

2.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과성

- √ 공정거래 법규 위반 사전 예방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용 감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법원 소송 대응 관련 비용 및 시정조치 등에 따른 과징금 비용 등 최소화
- √ 공정거래 법규 위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 예방
- √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인센티브(우수 이상)
 -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위원장 표창 등
- √ 타 준법지원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준법지원(감시)인, 정도경영 등
- √ 임직원 공정거래 법규 준수 의식의 내재화
- √ 해외 진출 기업 또는 해외 사업 추진 중인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

3. 공정거래위원회

3.1 정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3.2 기능

√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 개혁 및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하여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및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 시정, 표준약관 보급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 허위, 과장 표시, 광고 시정,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합리적인 선택을 도움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시정

√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 문제점 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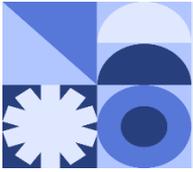
3.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경쟁정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거래정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정책	-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조물책임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본 편람은 콜마홀딩스 업무와 주로 연관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내용을 현행기준으로 다룸

II. 업무관련 법령

1. 「공정거래법」
2. 「하도급법」



1.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이란?

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1980년10월27일「헌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적절히 규제·조정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추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제정목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 내용	<p>전문 15장 1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p>법 위반에 대해 행정절차에 의한 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민사적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함</p>

1.1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1.1.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기업결합(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풀이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인적·물적 결합

다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수직결합

신규투자 수직합병 주식취득

동일한 산업, 다른 공정단계에 속하는
 기업이 합병 등을 통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원재료 생산부터 제품 판매까지 인접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결합)

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수평결합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수요대체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간의 결합
 (시장 내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큼)

공정거래위원회

다음은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혼합결합

결합하는 기업간
 수평·수직적 관계가 없는 경우
 즉, 이종업종 기업간의 결합

시장전체의 경쟁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평·수직결합과 달리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판단이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

1.1.2. 정의 및 유형

- 정의 :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M&A (Merger & Acquisition)라고 불림
- 기업결합의 수단 및 형태
 - 결합수단 : ① 주식취득, ② 임원겸임, ③ 영업양수, ④ 회사설립 참여
 - 결합형태 :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당사회사들 간의 관계에 따라 ▲수평결합(동종 업종의 경쟁사업자 간 결합), ▲수직결합(생산·유통 단계에서 인접해 있는 사업자 간 결합),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

1.1.3. 기업결합 신고제도(회사→공정위 신고 단계)

- 신고 요건 : 결합당사회사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 (규모 기준)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 ※ (예: 신고대상 O) 3천억원 회사가 500억원 회사 인수, 300억원 회사가 4천억원 회사 인수
(예: 신고대상 X) 5천억원 회사가 200억원 회사 인수, 2천억원 회사가 500억원 회사 인수
 - (거래금액 기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미만인 회사를 결합하더라도, ▲거래금액(기업결합의 대가)이 6천억원 이상이고, ▲해당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요
 - *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등
- 신고 시점 : 기업결합 이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전신고’* 및 기업결합 이행 후 신고를 하는 ‘사후신고’
 - * 사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의 심사결과 통지 전 기업결합 이행행위(주식취득 등)를 해서는 안됨(위반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사전신고)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②임원겸임 이외의 기업결합(①주식취득, ③합병, ④영업양수, ⑤회사설립)을 하는 경우
 -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기업결합 이행일(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 임원 선임 의결일,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대금 지급완료일 등) 전까지 신고 필요
 - (사후신고) 대규모회사가 ②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하거나,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 (신고기한) 기업결합 이행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필요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신고기한 후 신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1.1.4. 기업결합 심사제도(심사단계)

- 심사기간 : 기본 심사기간은 30일,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총 120일)
 -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
- 심사 유형 : ‘간이심사’와 ‘일반심사’로 구분
 - (간이심사)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간이심사로 분류하여 사실관계 등 간략한 신고내용만 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
 - *계열사 간 합병, 지배력 미형성,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 국내 영향이 없는 경우 등
 - (일반심사) 간이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획정, 시장현황, 경쟁제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처리

■ 경쟁제한성 추정

구분	내용
시장점유율 합계기준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참고: 1.5), 해당 거래 분야에서 1위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
대규모회사 기준	-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5%이상의 시장점유율 획득

■ 경쟁제한성 평가

구분	내용
수평결합	기업 결합 전후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유사품 및 인접시장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 고려
수직결합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혼합결합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1.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심결단계)

- 시정조치 : 심사결과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불허하거나(결합 금지), 일정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승인(조건부 승인)
 - (결합 금지) 가장 강한 조치로서 해당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
 - (조건부 승인) 구조적 조치(자회사 또는 보유자산 매각 등), 행태적 조치(일정 기간동안 가격인상 제한 등)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기업결합은 승인
- 시정조치 불이행시 제재조치: 이행강제금 부과(행정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형사벌칙)

1.1.6. 관련 사례

■ K사와 S사 기업결합 심사('24.05.)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사건 배경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1위인 사업자 K가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사의 주식 39.87%를 취득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23.4.26)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경쟁제한성 판단

1. K사는 디지털 음원 기획, 제작, 유통, 플랫폼 시장에서 모두 1위 사업자가 되어 시장집중도 및 지위가 향상되었다. 기획,제작 시장에서 13.25%, 유통시장에서 43%, 플랫폼 시장에서 43.6%의 점유율 보유하게 되었다. (시장집중도 향상)
2. K사가 인기 음원들을 플랫폼 자회사인 M사에만 독점 공급하거나, 타 경쟁 플랫폼에 지연 공급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매선 봉쇄)
3. 플랫폼 자회사 M사에 자사 음원에 대해 소비자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등 '자사우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매선 봉쇄)

이로 인해,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적용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조치내용

시정조치 → 경쟁 음원 플랫폼의 음원 공급 요청 시, 중단 및 지연 행위 금지, 독립된 점검기구 설립 등



함께 알아보기



Q) 저희 회사 매출액이 320억 원이며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이 3,500억 원 정도로 저희보다 큰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상대방 회사 매출액이 크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됩니다.

Q) 기업결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예외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 ②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
- ③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 부분을 미포함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①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Q) A사가 동일 업종의 B사의 주식 100%를 취득한 결과, A사의 시장 점유율은 34%, B사의 시장점유율은 18%가 되었다. 이후, A사+B사는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인 C사의 시장점유율이 36%일 때,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나요?

A) 기업 결합 후, A사와 B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2%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 C와 차이가 16%가 된다. 이는, 시장점유율 합계의 25%인 13%를 초과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으로 추정됩니다.

Q) 20% 이상 주식 취득으로 이미 기업결합 신고를 했는데, 신고 이후 상대 회사의 주식 매각 등으로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기업 결합 신고 후, 보유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한다 하여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신제품 광고 업무를 출시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반드시 내부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업무 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 회사와 거래하였을 경우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새로운 회사설립에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B사와 C사는 계열회사 관계인데 이러한 사실이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나요?

A)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B사와 C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됩니다.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를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8. DO & DON'T



DO(허용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단, 이후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대상)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 결합 신고 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최대출자자인 신고회사 자체가 신고요건인 신고대상 회사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만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DON'T(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 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 출자자가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 임차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1.1.9. 법조문(「공정거래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

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24. 2. 6.>

1. 계열회사 간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상대회사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2.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나. 겸임하는 임원 수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인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 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20., 2024. 1. 9., 2024. 2. 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 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2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2.1. 정의 및 유형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 의미함
- 공급자(판매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음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기준	제외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인 사업자 제외)	

* 다만,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유형

구분	내용 및 예시
가격남용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비스킷 제조 3사가 제품의 용량을 줄여 생산하면서 변경된 용량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표시한 행위
출고조절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유통단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행위
	대두유 제조사가 환율 급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일을 앞둔 10일 전 평소에 비해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 행위

<p>사업활동 방해행위</p>	<p>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p> <p>Q사가 경쟁 모뎀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행위,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해 자신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제한한 행위,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행위</p>
<p>진입제한행위</p>	<p>자유로운 시장 경쟁의 전제조건인 신규사업자나 기존 사업들의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방해하는 행위</p> <p>가입 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K사와 L사가 기업메시징 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는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p>
<p>경쟁사업자 배제</p>	<p>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의도로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거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p> <p>비료 유통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10개의 비료회사와 전속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판매를 금지하여 다른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p>
<p>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p>	<p>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p> <p>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독점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 상품에서 제외하여 소비자가 고가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p>

1.2.2. 범위반 시 제재

<p>시정조치</p>	<p>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p>
<p>과징금</p>	<p>관련 매출액의 6%이내,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경우 20억 원 이내</p>
<p>벌칙</p>	<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적용 대상)</p>

1.2.3. 관련 사례

■ K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24.10)(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사건 배경

K사는 'T' 플랫폼을 통하여 택시의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가맹호출(B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택시 일반 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일반호출은 가맹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가맹호출은 자신에게 소속된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호출 서비스이다.

법위반 내용

K사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 K사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휴 계약을 체결 후,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 결과 K사는 일반 호출 시장 및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51%에서 79%로 증가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로서 타 사업자는 대부분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택시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45조제1항제6호
→ 시정명령, 과징금(724억 원), K사 검찰 고발





사건 배경

P사는 철도 분기기(열차의 궤도 전환 구조물)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S사는 2020년 분기기 시장에 신규 진입하였다.

법위반 내용

P사는 독점 중인 분기기 시장에 S사가 진입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P사는 망간크로싱 공급업체에 S사와 거래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레일 공급업체에도 S사에 공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S사의 분기기용 원재료에 대한 거래를 방해하였다. 또한, S사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P사는 심의에 개입하여 성능검증 보류를 요구하였다.

이 결과, S사는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절차 방해로 인해 시장 진입이 약 4년 지연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P사의 시장 독점이 계속되었다. 또한, P사의 독점 시장으로 가격경쟁 결여 상태가 지속되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4억 원)



1.2.4. Q&A

함께 알아보기



Q) A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시장점유율이 55% 정도인데, 최근 갑자기 출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A회사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까요?

A) A회사 1개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이 55% 정도이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매출액이나 거래액이 40억 원 이상이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것입니다. 이런 A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 즉 ‘가격남용행위’를 시행한다면 이는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회사의 행위가 원료 수급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등에서 기업경영을 위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합리적인 기업 경영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A회사가 A회사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점에 대하여 신규로 진입하려 하는 경쟁 회사의 제품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A) A회사가 각 지점 담당자를 통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여부를 수시로 감시토록 하거나 각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는 등 방법여하를 막론하고 경쟁사업자의 제품 진열을 못하도록 한다면 신규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범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판매인이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진열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2.5. DO&DON'T



DON'T(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메시징' 사업자에게 통신망 사용료를 받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통신망 사용료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형마트와 배타적 거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키워를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키워의 다양성을 제한한 경우

PC운영체제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PC운영체제와 별개 제품인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PC운영 체제에 결합하여 판매함으로써, 독립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유인을 축소 시킨 경우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A회사가 화학비료 제조업체들과 배타조건부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화학비료를 A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경우, 타 비료판매업체들이 화학비료 시장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초래한 경우

표준기술을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정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사용료도 감액해주는 등 구매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구매 전환을 제한하는 경우

자동차제조 회사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판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 대리점(독립사업체)의 거점이 전 승인이나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거부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경우



1.2.6.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귀하가 아래 확인사항에 대해 'Y'를 체크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및 필요 시 시정 또는 보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Y/N
<p>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관련 매출액이 40억 원 미만인 경우 제외)에 해당합니까?</p>	
<p>수급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 등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변경하게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p>	
<p>상품이나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p>	
<p>원재료 구매 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제한, 거래거절, 가격 또는 거래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p>	
<p>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계약,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매입,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제한 등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p>	
<p>신규사업자와 거래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신규진입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방해, 필수 원재료의 수급조절 등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p>	
<p>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p>	

1.2.7. 법조문(「공정거래법」 제4조~제6조)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24. 2. 6.〉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1.3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억제

1.3.1. 정의 및 유형

■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형태로 추진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을 확정하고자 매년 공시대상기업 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 규제 목적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함

■ 경제적집중억제 유형

(1) 지주회사제도

- ‘지주회사’란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출자단계 및 지분율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

구분	내용
주요 내용	<p>[지주회사의 금지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②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⑤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p>[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금지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적용 대상	지주회사(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 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2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대상)

(2) 상호출자금지제도

- ‘상호출자’란 회사 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함
- 상호출자는 자본총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 형태로서 이를 막기 위함

구분	내용
주요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 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적용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국내 총생산액(명목 GDP)의 1천분의 5 이상(2024년 기준 자산총액 10.4조원)
예외 대상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 금액의 2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대상)

(3)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가는 지배구조를 말함
- 순환출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괴리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구조는 총수(일가)의 부당한 보상 청구 및 개별기업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전이되어 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구분	내용
주요 내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 및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를 금지
적용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예외인정	기업 사업구조개편(합병·분할, 영업 전부의 양수 등), 정당한 권리행사(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수령 등)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대한 예외사유에 따라 6개월~3년의 해소유예기간 부여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 금액의 2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대상)

(4)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제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집단이 규율회피를 위해 사전에 순환출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도 규율할 필요가 있음

구분	내용
주요 내용	신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
적용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반시 제재	금지명령 등 위법한 의결권 행사 시 시정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대상)

(5) 채무보증제한 제도

- ‘채무보증’이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을 할 때 신용 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해 주는 행위를 말함
- 금융기관의 중복, 과다보증을 제한하고 계열회사간 빚 보증을 통한 계열회사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금융자원이 기업집단의 힘이 아닌 효율성에 의해 배분되게 함으로써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구분	내용
주요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금융, 보험사 제외)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적용 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위반채무보증금액 20%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대상)

(6)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와 사외이사 등에 의한 견제를 유도하고,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함

구분	내용
주요 내용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상품·용역의 경우 분기 거래금액 합계액) ① 100억 원 ②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려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
적용 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2025년 기준 국내 총생산액(명목 GDP) 기준으로 변경 검토 중)
위반시 제재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 상법상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는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불투명한 경영 행태에 대한 효과적 감시를 위해 도입

구분	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자기 회사의 소유지배 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 · (소유지배구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현황 · (재무구조) 비유동자산 및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증여·수증,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 (경영활동)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영업양도·양수·임대, 회사의 합병·분할, 해산,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관리 절차 개시·중단·종료 등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 · 다만,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 회사(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제외)는 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 이더라도 해당
위반시 제재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8)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 사전적 규제로서 출자총액제한한도 폐지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도입

구분	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일반현황)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 (임원·이사회 현황) 임원명·직위·취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 (주식소유현황) 소유지분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 등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자금거래 및 자금대여 현황, 유가증권거래 현황, 상품·용역거래 현황 및 내역,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채권·채무 잔액 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 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자문용역거래 및 부동산 임대차거래 현황,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등 · (순환출자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및 변동현황 · (지주회사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계열회사 현황
적용 대상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위반시 제재	·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시정조치

1.3.2. 관련 사례

■ S사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24.03)(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사건 배경

S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인 C와 동일한 기업집단「J」에 속하므로 C와 계열회사이며, C는 S의 발행주식총수의 53.71%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 이므로 S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법 위반 내용

S주식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S사는 2021.04.28부터 2023.03.15까지 B사의 주식 5,000,000,000주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과징금(219,000,000원)





사건 배경

H사는 2013.7.6부터 현재까지 법상 지주회사이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H사는 자회사인 B를 흡수합병 하면서 Y증권의 주식 일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법 위반 내용

H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Y증권의 주식 4,452주(0.002%)를 2021.04.02부터 2023.08.18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까지 약 2년 6개월간 소유하였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과징금(1,000,000원)



1.3.3. Q&A

함께 알아보기



Q)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Q)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부여된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A) 불가피한 사유(①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②주식처분 금지계약, ③사업의 현저한 손실, ④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 감소 또는 주식의 취득 처분 등이 곤란 경우)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Q)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항상 금지되나요?

A)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기 5가지 사유의 경우 가능합니다.
①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②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3.4. DO&DON'T



DO(허용되는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 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 보유기준에는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DON'T(허용되지 않는 경우)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으로 소유하는 행위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증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1.3.5. 법조문(「공정거래법」 제18~24조, 제26조~제28조)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 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1.>

1.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

- 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0.>

1. 계열회사가 아닌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0.>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벤처투자회사인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인 경우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조합(「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는 행위
 -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자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투자조합
 - 나.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출자한 투자조합

- 다.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투자조합(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는 행위(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한다)
- 가. 자신이 소속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나.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라.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6. 자신(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포함한다)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및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회사로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도록 하는 행위
- ④ 일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失權)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

후 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같은 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세 명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그 변동사항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그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1.4.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부당지원행위(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4.2. 부당지원행위 정의 및 유형

■ 부당지원행위

-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말함

■ 규제 목적

-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

■ 부당지원행위 유형

(1) 부당한 자금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지원하는 행위

(예시) 상품·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A계열회사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2)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지적 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며 지원하는 행위

(예시) A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행위

(3) 부당한 인력지원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주며 지원하는 행위

(예시1) 계열회사가 업무지원을 위해 B계열회사에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A계열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예시2) 인력파견계약을 체결 후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 주체가 인건비를 미회수하는 경우

(4)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등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그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예시)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1.4.3. 범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조치의 금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과징금	3개년 평균매출액의 10%이내,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적용 대상)

1.4.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정의 및 유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 규제 목적 :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여 편법적으로 부가 계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적용 대상

제공주체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공객체	①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② 동일인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이 총수의 2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③ 위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정상적인 거래 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자금, 자산, 상품·용역, 인력거래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행위

(예시1) 제공객체에게 공장, 매장, 사무실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예시2) 보유하고 있는 제공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경우

(적용제외)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차이 7%미만 및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 총액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인 경우

(2) 사업기회의 제공

-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예시) 지원주체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적용제외)

- ✓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3)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기술력, 가격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적합한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예시) 합리적인 검토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열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제외)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 및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미만인 경우

(4) 적용제외(「공정거래법」제47조제2항)

유형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특성상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 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 회사의 기획·생산 등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래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이해도 및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연구개발시설 등 필수 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경우 ·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가능한 경우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금융위기 또는 해킹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1.4.5. 범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조치의 금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과징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년 평균매출액의 10%이내,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의 경우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특수관계인 포함

1.4.6. [비교] 부당지원행위 vs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관련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제 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제 내용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지원 주체	사업자(제한 없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 (동일인 자연인)
지원 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일가(동일인 및 그 친족)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이상인 국내 계열회사 · 위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국내 계열회사
금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상당한 규모의 거래 포함) ②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 (통행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기회 제공 ③ 합리적 고려 및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 저해성 입증 불필요 ·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 판단
제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과징금 (3개년 평균 매출액의 10% 이내,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지시 또는 관여 특수관계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

1.4.7. 관련 사례

■ 기업집단 「C사」 소속 CA사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행위 제재 ('24.08)(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사건 배경

CA사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한 뒤, 타 대기업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자 하였다. CA사는 중소기업들과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CB”을 설립하였다. 그 이후, CB는 CB 자본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중소기업인 주주들을 모두 퇴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법 위반 내용

CA는 자사 인력 약 221명을 CB에 파견하여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 원 전액을 CB 대신 지급하였다. (CB의 업무만을 담당 - 영업 전략, 인사 관리 등 핵심 관리자 업무) 이 결과 CB는 우수한 인력을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었으며, 유리한 경쟁여건을 갖출 수 있었다. 그 결과, CB는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지원주체), 동조 제2항(지원객체)
→ 시정 명령, 과징금(잠정, 245억 원 (CA사 167억 원, CB사 78억 원))





사건 배경

J건설은 그룹 내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 사실상 시공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계열사 JA건설과 JB건설은 J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이며 수익성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법 위반 내용

J건설은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사업상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JA건설 및 JB 건설과 총 7건의 공동도급(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 발주공사에서 공동도급은 사업상 더 유리하거나 특정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J건설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역량이 미미한 JA건설과 JB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이 결과 JA건설과 JB건설은 각각 138억 원,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하였으며, JA건설은 지원행위 이전보다 시공이익 786% 증가 및 JB건설은 20% 증가하였다. 또한,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고시킬 수 있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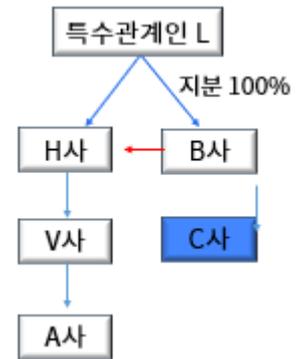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9호(지원주체), 동조 제2항(지원객체)
→ 시정 명령, 과징금[총 96억 원 (J건설 48억 4천5백만 원, JA건설 31억 4천8백만 원, JB건설 16억 9천 6백만 원)]





사건 배경

대기업집단 S의 특수관계인 L은 B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H사 지분을 취득하여 H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B사가 H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이 필요 하였으며, 이에 V사는 B사에 C사를 인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법 위반 내용

A사는 C사에게만 정상 할인액보다 더 높은 할인액을 적용하여 다른 비계열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C사에 제공된 할인은 A사가 영업 적자가 발생하는 수준이었으나, C사의 적자를 막기 위해 지속되었다. 이 결과 C사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춰 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되었다.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L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L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L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지원주체), 동조의2제1항제1호(제공주체*), 제23조제1항제7호(지원객체), 동조의2 제1항제1호(제공객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간에 추가 적용된 법

→ 시정 명령(A사, B사, 특수관계인 L) 및 과징금(총 3,276백만 원 (A사 2,122백만 원, B사 1,154백만 원), 고발(A사))



1.4.8. Q&A

함께 알아보기



Q) 정상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A) 해당 거래와 동일한 상황 (시기, 규모, 종류, 기간 등)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서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Q) 동일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그 사례와 자신의 사례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 등의 차이가 있는지 살핍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Q) 유사한 사례도 없다면요?

A)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선정합니다.

Q) 총수일가 지분보유비율이 낮은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나요?

A)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대상이 아닌 회사라도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Q) 일감 몰아주기 규정에 따르면 계열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A) 수의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유로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검토 없이 진행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신제품 광고 업무를 출시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회사에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반드시 내부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업무 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 회사와 거래하였을 경우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회사의 정보시스템에는 핵심적인 영업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계열 IT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보안성에 따른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외부 IT업체에 위탁하더라도 보안협약서 체결, 피해보상규정 마련 등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4.9. DO&DON'T



DO(허용되는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나 사업부문에 손실부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개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등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공장·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경우

거래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경기 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DON'T(허용되지 않는 경우)

지원받는 계열회사가 지원행위로 인하여 다음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

- ①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 형성 또는 강화할 우려 있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 있는 경우,
- ③ 경쟁사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경우, ④ 타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지원해주는 계열회사가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면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받는 계열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 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1.4.10.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귀하가 아래 확인사항에 대해 'Y'를 체크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및 필요 시 시정 또는 보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Y/N
계열회사 간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열회사 간에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열회사 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열회사 간에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보다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열회사 간에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회사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 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1.4.11. 법조문(「공정거래법」제45조, 제47조)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

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2025년 상반기 주요 개정 사항] 부당한 지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심사지침 개정

1.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고려하는 판단기준 신설

-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부당성이 낮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

- ① 지원의도(완전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를 실행할 인센티브가 적음)
- ②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 ③ 경쟁여건의 변화(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음)

- 부당성 우려 존재하는 경우

- ① 규제회피·탈법행위를 위한 목적의 지원행위
- ②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행위 등

*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 정도 판단 기준]

-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고려사항 : 임원 겸임 여부, 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독립적 의사결정 가능성, 업무의 구분성,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

(2)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성립 및 불성립 사례

부당지원행위 사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① 완전모회사 적용 법령을 면탈·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자회사 설립하여 지원	① 연구개발 등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거래로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의 사업 일부로 운영 되는 경우
② 자본잠식 등 정상적인 존속이 어려운 완전자회사의 시장 퇴출 예방 목적	②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 설립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③ 완전자회사 설립 후 지원행위를 통해, 완전모자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가	③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부당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고려하는 판단기준 신설

- 완전모자회사 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 낮은지 ‘추가적으로’ 고려

- ① 이익제공의도(이익제공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 ②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익제공행위 전후 부의 총합이 변하지 않음)
- ③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기 어려움)
- ④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목적 여부

(2)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의 안전지대 신설

-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요건을 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

- ①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②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③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④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I.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 용어의 정의

1. “지원주체”라 함은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지원행위를 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객체”라 함은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때 다른 회사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결과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에 불과하므로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규정이 시행(1997. 4. 1.)되기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 동 규정의 시행시점 이후에까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변제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를 변경하는 것 등과 같이 새로운 지원행위라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처분 가능시점 이전에 지원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6.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7. “지원성 거래규모”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지원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의 규모를 말한다.

Ⅲ.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하는 경우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지원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도록 하는 경우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이하 “자금거래”라 한다)에 의한 지원 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다.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 개별정상금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2)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3)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마.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되어 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지원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지원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바.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사. 개별정상금리를 위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는 해당 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대출계약에 의하여 실행한 대출액 잔액 전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금리

를 말한다. 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아.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자. 개별정상금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적용된 금리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거래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볼 수 있다.

차.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적용된 실제적용금리가 개별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개별정상금리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려는 의도하에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의 지원금액은 지원주체가 지원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객체가 받았거나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제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타. 자금거래에 의한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상당성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

파.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자금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유가증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 임대차, 상품·용역거래, 인력제공 등에 의한 지원행위의 거래총액 판단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자산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어음 고가매입]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어음 고가매입]
- 지원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지원객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역외편드를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주식 또는 기업어음 고가매입]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지원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지원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 [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주체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 우회인수]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원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지원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지원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지원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

- 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경우 [전환사채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크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사채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지원객체에 매각하는 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지원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회사채 고가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지원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는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산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다.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 1)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 2)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 3)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산거래에 적용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

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본 지침에서 지원성 거래규모의 산정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후순위사채의 경우 지원주체가 매입한 후순위사채의 액면금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 2)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의 경우 지원주체의 주식 매입액을 지원성 거래규모로 본다.

마.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산거래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거나 정상임차료보다 상당히 높은 임차료로 임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부동산을 상당한 규모로 임대차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경우 [부동산 저가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나. 정상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에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에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 × 임대일수 × 정기에금이자율 / 365 = 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다.

해당기간의 임대보증금 × 임대일수 × 정기에금이자율 / 365 = 임대료

라. 실제 임대료·임차료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차이가 정상 임대료·임차료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부동산 임대차거래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가.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는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주체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통하여 지원객체와 비계열회사 간 거래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품·용역의 내용·품질 등 거래조건이 유사함에도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2) 상품·용역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 중 거래대가 차이로 인한 지원행위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정상가격의 산정은 III. 2. 다.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4)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에 있어 지원주체 또는 지원주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는 지원

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1(지원주체)-계열회사2(지원객체)-계열회사3의 거래구조에서는 계열 회사1 또는 계열회사1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경우에 계열회사1이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2를 배제한 채 계열회사2의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3과 직거래를 했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5)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상품·용역 거래에 적용된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6)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품·용역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각종 물류업무를 비경쟁적인 사업양수도 또는 수의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몰아주는 경우

2)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4) 위 3)에 의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본다.

5. 인력을 제공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지원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지원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지원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나. 인력 지원행위 중 위 가.의 전단의 지원행위는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실제지급급여”라 한다)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한다.

다.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에서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객체와 지원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라. 실제지급급여와 정상급여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상 지원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예시)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 및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 지원주체가 직접 공급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중간 유통단계로 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지원주체가 자신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나.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여부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3)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4) 지원주체가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5)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IV. 부당성 판단기준

1. 부당성 판단의 기본원칙

가.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사업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특수관계인이 해당 지원행위로 얻은 경제상 급부를 계열회사 등에 투자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라. 다른 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한 사업자(이하 ‘완전모회사’라 하며, 제3자가 보유한 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으로 인해 향후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그 다른 사업자(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 간 지원행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 가.~다.의 원칙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임원 겸임 여부, 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독립적인 의사결정 가능성, 업무 및 대외 기업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정상적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의 지원인 경우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2.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중소기업들이 합하여 1/2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를 하여 해당 계열회사가 시장 점유율 5% 이상이 되거나 시장점유율 기준 3위이내의 사업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나.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업자보다 상당기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

다.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가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자금력, 기술력, 판매력, 제품이미지 개선 등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가 사업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는 경우

라.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예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계열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신규진입이나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마. 관련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 경쟁수단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 계열증권사의 회사채인수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를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로 내세우고 자신은 하인수회사가 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증권회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바.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로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완전모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면탈·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완전자회사의 경쟁 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자본잠식 등 정상적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완전자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의도로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완전자회사가 속한 시장의 신규진입 또는 퇴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

- 완전자회사를 설립한 후 지원행위를 통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자격 등을 확보하고, 입찰에 완전모자회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입찰과정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경우

3.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예시)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사업부문을 임직원 출자형태로 분리하여 설립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회사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예시)

- 소요부품을 자체 생산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기존거래선을 잠식하지 않는 경우
-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회사에 공급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기존거래선과의 공급관계만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예:70%이상)을 수출하던 사업부문을 분리설립한 회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분리설립된 회사가 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수출하는 경우

라.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연구기술인력 활용 및 분사후 분할된 자산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경우로서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은 경우

마.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바.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자. 위 IV. 1.의 기본원칙상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완전자회사가 독자적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의 사업 일부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지원행위가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루어진 경우

(예시)

- 완전모회사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완전자회사에 연구개발 등을 의뢰하고 완전자회사는 그 결과를 완전모회사에 제공하는 거래인 경우

2) 완전모회사의 사업부가 물적분할 등을 통해 완전자회사로 분리·설립된 경우로서, 분리·설립 이후의 지원행위가 분리·설립 이전 사업부 간 거래와 사실상 동일한 경우

(예시)

- 완전모회사 내 다른 사업부에 부품·가공품·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부가 완전자회사로 분리·설립된 후, 분할 후에도 분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에 부품·가공품·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경우

3)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사업목적이 공익적 업무 수행에 있고,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의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예시)

- 완전자회사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완전모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회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V. 보칙(삭제)

V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I.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별표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과 [별표 4] '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 용어의 정의

1. "제공주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3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3.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친족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에서 제외한다.
4. "특수관계인 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공주체의 계열회사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 회사를 말한다.
5. "제공객체"라 함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회사로서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6. "이익제공행위"라 함은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i)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i) 사업기회의 제공, iii)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iv)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Ⅲ.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

1. 규정의 적용

가. 법 제47조는 회사가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의제일부터 적용한다.

나. 법 제47조는 회사가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통지를 받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 제47조 규정의 최초 시행(2014. 2. 14)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 8. 13. 개정 법률 제12095호 부칙 제2조 제2항). 위 규정의 최초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로서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거래의 경우 2015. 2. 14.부터 거래종료시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위 규정을 적용한다.

라. 법 제47조 개정규정의 시행(2021. 12. 30)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1항). 또한 위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계속 중인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2020. 12. 29. 개정 법률 제17799호 부칙 제17조 제2항).

2. 제공주체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제공주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나. 제공주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공객체

가. 제공객체에는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 회사가 포함된다.

나. 특수관계인 회사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친족이 수인인 경우 수인의 친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다. 이하 같다)과 합하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지분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통주, 우선주, 자사주, 상환주식, 전환주식, 무의결권주식 등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제한 여부를 불문하고 계열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여기서의 지분이란 직접 보유한 지분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 특수관계인이 A회사 지분을 30% 보유하고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40% 보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B회사 지분을 12%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라. 지분의 보유 여부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차명주식, 우회보유 등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해당한다.

마.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라 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이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인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의 친족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동일인의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사.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4. 이익제공행위

가.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상품거래나 자금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제공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3자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제공주체의 매입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그 매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공객체 발행의 기업어음을 제공객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를 매개로 하여 우회적으로 제공객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주체가 제3자인 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다음 이를 다시 제공객체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제공객체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공객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제공주체가 제3자인 대주단(貸主團)에 제공주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대주단과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단으로 하여금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Ⅳ.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구체적 검토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판단기준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일반인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말하고,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여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
- 2) 제공주체가 직접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공주체가 제3자를 매개하여 제공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
- 3)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거래규모와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제공기간, 제공횟수, 제공시기, 제공행위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에게 콜자금을 시중 콜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의 콜자금 등을 제공한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제공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객체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한 경우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수령한 경우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금리로 예탁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제공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한 경우
- 제공객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제공한 경우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해당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제공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제공주체의 이익제공 없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가)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나) 제공객체가 제공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이익제공 규모, 제공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점에 제공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다)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제공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라) 제공객체가 제공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마) 제공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4) 공사대금 미회수, 기간이 특정 되어지지 않은 단순대여금 등 이익제공 시점에 만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객체의 월별평균차입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여기서 월별평균차입금리는 제공객체가 해당 월에 독립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규모를 가중하여 산정한 금리를 말한다.

5)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제공주체의 차입금리가 제공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6) 개별정상금리를 위에서 규정된 방법에 의해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제공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개별정상금리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 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일반정상금리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7)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차입방법 등을 감안할 때 제공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해당한다.

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시)

- 제공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부동산 저가임대]
- 제공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부동산 고가임차]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제공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제공객체로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경우[기업어음 고가매입]

- 제공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기업어음 고가매입]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계열투자신탁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제공객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금리로 매입한 경우
[기업어음 또는 회사채 고가매입]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제공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금리로 인수한 경우[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 고가매입]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후순위사채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失權株)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제공주체가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증자 전의 지분율의 50/100 이상 증가한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아니함)[주식 고가매입]
- 금융관련 법규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통하여 실권주를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인수하거나 기타 탈법적인 방법으로 제공주체가 인수한 경우[주식 우회인수]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제공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우회 인수한 경우[전환사채의 고가매입]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권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크에도 불구하고 제공주체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전환사채의 저가주식 전환]
-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이익귀속객체 등에 매각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매각]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제공객체가 발행한 저금리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회사채 고가매입]
- 계열금융회사가 제공객체가 보유한 부도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부도 유가증권 고가매입]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제공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제공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제공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제공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償却)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제공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
- 제공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 주택관리업무를 제공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보다 제공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제공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한 경우
- 제공객체 소유 건물·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 임대료를 약정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제공객체에게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은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관행이나 기존의 거래형태와 달리 제공객체를 통해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제공객체의 역할을 제공주체가 수행하거나 제공주체와 역할이 중복되는 등 제공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 [통행세 거래]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실제 거래가격이 해당 자산·상품·용역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다면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한다.

3)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나)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이익제공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한다.

다)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한다. 이 경우 자산·상품·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상품·용역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 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인력 거래는 제공객체가 제공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하 "실제지급급여"라 한다)이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제공주체와 제공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이하 "정상급여"라 한다)보다 적은 때에 성립한다.

(예시)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제공주체가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경우
- 제공객체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을 제공주체 회사의 고문 등으로 위촉하여 제공주체가 수당이나 급여를 지급한 경우

3)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자에 대한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제공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제공객체와 제공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에서 제공객체와 제공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제공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위의 정상급여로 간주한다. 다만, 인력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제공객체와 제공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마. 적용제외

1)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 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조건 차이와 거래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거래총액은 적으나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가 많은 경우 또는 ②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는 작으나 거래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사업기회의 제공

가. 판단기준

1) 사업기회의 제공은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2)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되, 해당 규정에서의 '동일인'은 제공주체인 회사로 본다.

(예시) 해당 기준에 따른 경우 다음과 같은 회사가 제공주체인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제공주체인 회사가 그 회사 임원과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제공주체인 회사가 임원임면 등을 통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제공주체인 회사(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회사(그 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3)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란, 구체적으로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의미한다. 이때,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인 회사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공객체에게 보다 더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공객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이익의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가 아니다.

5) 사업기회 제공 당시에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영업권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

6)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기회'에는 ① 사업기회 제공 당시 실제 회사가 수행하여 수익을 일으키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② 회사가 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등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된다.

7) '수행할 사업'이라 함은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외부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부적 검토 내지는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을 포함한다.

8)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인지 여부는 제공주체 자신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본래 사업과의 유사성, 본래 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인지 여부, 본래 사업과 전·후방으로 연관관계에 있는 사업인지 여부, 회사재산의 공동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회사의 사업과의 관련성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도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

9) 사업기회 제공은 회사가 사업양도, 사업위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자회사의 주식을 제공객체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제공객체에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자회사의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제공객체에게 실권주를 인수시키는 행위, 회사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공객체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소극적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나. 적용제외

1)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①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목), ②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나목), ③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다목)에는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법률적 불능 또는 경제적 불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에게는 법적으로 진출이 금지된 사업인 경우에는 '법률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사업기회 검토 당시에 회사의 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인 경우에는 '경제적 불능'으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3)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가 지니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는 사업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기회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가의 지급에는 현금 내지 현금대용증권 외에도, 해당 사업에 관한 부채를 인수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기회 제공 내지 대가 지급에 앞서 해당 사업기회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는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사업기회 거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업집단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등의 사정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평가기준이 되지 아니한다. 제공주체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업기회를 거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가.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나.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자금에 해당하면 IV. 1. 나.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금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가증권 등 자산에 해당하면 IV. 1. 다.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자산 거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 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적용제외에 관해서는 IV. 1. 마. 2), 3)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가. 판단기준

1)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한다.

2) 원칙적으로 ①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②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③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의 경쟁입찰 또는 그에 준하는 입찰을 의미한다)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입찰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시장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낙찰자 선정사유가 불합리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비교하거나(복수의 계열회사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뒤 통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수의계약 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거래 당시 제공객체의 경제적 상황, 제공객체가 얻은 경제적 이익,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나. 거래총액 및 거래비중에 따른 적용제외

1)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억 원 미만이고(거래총액 요건),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거래비중 요건)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위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려면 거래총액 요건과 거래비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①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적으나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이 높은 경우, 또는 ②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적으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많은 경우에는 적용제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라도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된다.

3) 거래총액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 거래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간에 이루어진 전체 상품·용역의 거래 규모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거래총액이란 제공객체의 매출액 및 매입액

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4) 거래비중 요건과 관련하여 평균매출액은 매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본다.

(예시)

- 위반행위가 2017년에 시작되어 2018년에 종료된 경우 2017년에 대한 평균매출액은 2014~2016년, 2018년은 2015~2017년 동안의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한 후, 위 각 평균매출액에서 각 해 거래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하여 각 해당연도의 거래비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적용제외

1)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적용이 제외된다.

2) 법 적용제외 사유는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시행령 [별표 4]에서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또는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바, 법 적용제외가 인정되려면 시행령 [별표 4]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가)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4] 1호 가목 내지 마목의 다음 거래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거래

(예시)

- 제조 공정에서 상품의 특성상 계열회사의 부품·소재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부품·소재 등을 조달 받아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이미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현저한 비용·시간·노력이 소요되어 사실상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래

(예시)

- 해당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설계, 구현, 운영 등 단계에서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3)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는 경우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예시)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분할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통해 부품·소재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 계열회사 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 또는 조직을 분사 및 통합하여 전문화된 계열회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해당 전문화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4)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래

(예시)

- 회사의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계열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 업무 절차 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계열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거나 표준화되고 유사한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상호 거래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5)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하는 거래

(예시)

-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한 계열회사와 관련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구축 또는 개발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을 재개발 또는 증설을 통해 고도화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 공정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능의 개선 또는 변경, 추가, 하자보수함에 있어 기존 상품·서비스 생산공정의 구축·개발에 참여한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 사용자가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아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품·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계열회사 외에 신뢰성이 검증된 다른 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 장치산업에 있어 기존 공정에 연계되거나, 기존 공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용역 수행자인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
-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미 거래한 건으로서 해당 계열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여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 계열회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나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업체와 거래할 경우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나) 이와 동시에 효율성 증대효과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이 때 효율성 증대효과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거나 여러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4)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가) 보안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 4]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다음 거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예시)

- 새롭게 개발되어 아직 관련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아니한 필수시설·핵심기술의 관리·보관이 필요한 경우

- 핵심적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기밀보호구역 등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방위산업체로서 군수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취급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비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비밀정보가 외국 등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예시)

-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계열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지의 보관·운송 등 거래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정책이 요구되는 경우

나) 이와 동시에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유형 또는 무형의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의미한다.

라) 다른 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하여 모두 법 적용제외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보안서약서 체결 등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외부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5)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가) 긴급성에 따른 법 적용제외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이어야 한다.

나) ‘회사 외적 요인’이라 함은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 스스로 긴급한 상황을 자초하거나 회사 내부적으로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긴급성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라 함은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기간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상품의 성격이나 시장 상황에 비추어볼 때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

- 상품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 설비 등을 외국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그 외국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경우
-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상품수거 또는 제작결함 시정(Recall)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랜섬웨어, 디도스해킹 등 긴급 전산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다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피해 확산 등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계열회사인 시스템통합업체와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외부업체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사업자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대체사업자가 없거나 대체사업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라)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V. 부당성 판단기준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부당한 이익’ 인지 여부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3. 다른 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한 사업자(이하 ‘완전모회사’라 하며, 제3자가 보유한 자회사의 전환사채 등으로 인해 향후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그 다른

사업자(이하 ‘완전자회사’라 한다) 간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의 목적과 의도,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 1.~2.의 판단기준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완전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임원 겸임 여부, 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독립적인 의사결정 가능성, 업무 및 대외 기업거래활동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

4.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 간 이익제공행위가 다음 가.~라.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이익제공행위로 인해 제공객체가 얻은 이익이 제공주체가 입은 손실과 같거나 적어서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나.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서, 이익제공행위가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 이익제공행위로 제공주체의 지급능력이 악화되어 제공주체의 채권자 등 제3자가 손해를 입지 않는 경우

라. 이익제공행위가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제공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6. 다만, 법 제116조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Ⅵ.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

1. 제공객체의 의무

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나. 법 제47조제3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익제공행위의 상대방인 제공객체이다. 제공객체가 법 제47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제공객체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제공객체가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2. 특수관계인의 의무

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 제47조제4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수관계인 중에서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47조제4항 위반은 동일인 또는 그 친족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 부당한 이익이 지시 또는 관여한 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다.

다. 지시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지원주체 또는 지원객체의 임직원 등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든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를 말하고, 관여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계하여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지시 또는 관여 여부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제공주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해당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Ⅷ. 유효기간

이 심사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심사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5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1.5.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부당공동행위(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5.2. 정의 및 유형

■ 정의

-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는 행위, ‘담합’이라고도 함

■ 규제목적

- 기업에는 신제품 개발 유인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구입하게 되며,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기에 규제 필요함

■ 공동행위의 성립

- 2개 이상의 사업자 :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함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협약, 결의, 양해각서,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공동행위 유형

구분	예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세제 제조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공장 도매 가격 합의
상품·용역의 거래 및 대금지급 조건 결정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이 서비스로 실시하던 탄산음료 리필 서비스를 합의하여 일시에 중단한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총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한 행위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빙과류 도매업자들이 경쟁사업자의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약정을 체결한 행위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도입 제한	사업자 간에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신·증설을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소주 생산업자가 공동으로 종이 박스형 소주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행위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관리	정화조회사들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후, 판매 창구를 단일화하여 생산·판매 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
입찰담합	정유사들이 군납 유류 입찰 때 합의하여 순번을 정하여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경우
정보교환 공동행위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 재고, 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 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 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1.5.3. 범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해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과징금	위반기간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20%이내,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적용 대상)

1.5.4. 자진신고 감면

-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또는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면제, 고발의 면제 가능

과징금, 시정조치 면제	과징금 면제, 시정조치 감경 또는 면제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번째의 자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한 자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 등에 협조한 자	자진신고자 등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진신고 하거나 조사 등에 협조한 자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실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 및 심의·의결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자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자		

1.5.5. 관련 사례

■ 3개 제지사의 신문용지 가격, 판매량 제한 담합 제재 ('24.11)(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사건 배경

종이신문 효용 감소로 인해 신문용지 시장에서 공급과잉이 심화되었고, 반면 신문폐지 수집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신문 용지 생산원가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신문 용지 제조사 3개 사들은 제조·판매 분야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법 위반 내용

각 3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1년 신문용지 1톤 당 가격을 6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신문사 등 거래처에 인상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22년에도 1톤 당 가격 6만 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또한, 3개 사는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들을 상대로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이 결과, 3개 사는 담합을 통해 거래처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평균 가격 약 12만 원(16%)인상 하였다.

적용 법조 및 조치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가격 담합), 제3호(판매량 제한 담합)
→ 3개 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 총 30,537백만 원, J제지사 고발





사건 배경

시스템 욕실의 발주처가 공동주택의 현장별로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시스템 욕실 공사 입찰은 대부분 최저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이에 따라 업체들 간 경쟁으로 입찰 가격이 낮아져 매출이익이 감소하였다. 이에 경쟁사들 간의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합의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법 위반 내용

9개 시스템 욕실 업체들은 '15~22년까지 총 114건 입찰에서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법 위반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 (입찰담합) → 9개 사 시정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



1.5.6. Q&A

함께 알아보기



Q) 몇몇 관련 업체들이 모두 모여서 가격 수준에 대해 의사교환을 한 경우에도 담합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부당한 공동행위는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합의가 존재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계약, 협정, 동의서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사교환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저희 회사는 화장품 자재 중 일부 부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합리적 제품 구매를 위하여 다른 회사들과 구매 가격을 합의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들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인가요?

A) 수요자들이 물품구매에 있어서 그 가격을 합의하여도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Q)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 중 일부만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인가요?

A)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A사가 B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도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나요?

A)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2이상의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사와 B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어서 부당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시장에서 두 사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합니다.

Q) 공장의 가동시간을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A)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합니다.

Q) 합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암묵리에 이루어지는데, 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 제40조 제5항에 추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 증거가 없을지라도 해당 행위의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회수, 양태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또는 법 제40조 제1항의 각 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Q)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가 자신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A)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Q)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한 협의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나요?

A)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5.7. DO&DON'T



DO(허용되는 경우)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① 해당 산업 내 상당수 기업이 불황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을 것
- ② 해당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또는 방법의 낙후로 생산능률이나
- ③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것
- ④ 기업의 합리화를 통해서 해당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 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조정의 효과가 더 클 것

연구·기술 개발의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① 해당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 ②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 ③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①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 ② 합리화 내용이 해당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게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할 것
- ③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더 클 것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의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① 공동행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가 명백할 것
- ②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모두가 중소기업자일 것
- ③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할 것
- ④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DON'T(허용되지 않는 경우)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②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③ 사업자별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거나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④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⑤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⑥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 관리하거나 그것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⑦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낙찰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⑧ 가격,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 포함)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① 영업 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
- ②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들이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자신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



1.5.8.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귀하가 아래 확인사항에 대해 'Y'를 체크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및 필요 시 시정 또는 보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Y/N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 범위 설정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 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가(대금)의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가(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품·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별로 할당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 사항	Y/N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생산·출고·수송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자별로 특정 지역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업계 전체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정한 장비 도입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새로운 종류 또는 규격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을 제한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공동으로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 부분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입찰·경매) 낙찰·경락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경락 받을 수 있도록 투찰 여부나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 또는 경락 받을 비율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경쟁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1.5.9. 법조문(「공정거래법」 제40조)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6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1.6.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불공정거래행위(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풀이

끼워팔기란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물건까지 억지로 함께 사게 만드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예시를 보는 끼워팔기

끼워팔기

게임기를 사려면 우리 가게에서 CD도 사야해!

난 게임기만 갖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사야하는건가?

게임기 판매 매장

소비자A씨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도록 한다고?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행위

정상적인 거래 방식(관행)에 어긋나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물건을 사게 하거나, 어떤 특정한 가게와 거래하게 만드는 것

예시를 보는 사원판매

사원판매

우리 회사 물건 꼭 사야해요!

사원이라는 이유로 꼭 회사 물건을 사야한다니..

회사

직원

1.6.2. 정의 및 유형

■ 불공정거래행위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 규제목적 :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시정 및 거래형태 개선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9가지)

구분	내용 및 예시
거래거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주류제조사가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 않은 사례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행위
	소금제조사가 A, B 두 개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현금결제비율과 소금공급비율을 달리하여 차별취급한 사례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치약제조사가 경쟁 치약제조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치약을 개당 1원으로 응찰하여 낙찰 받은 후 330만 개를 공급한 사례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제약업체들이 종합 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 등을 지급한 사례
거래강제	사업자가 끼워팔기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본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예식장사업주가 자기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결혼의상 등 부대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 사례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유명 브랜드 전자제품 제조사가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상황이나 상대방의 주문 의사에 상관없이 과대한 물량을 공급한 사례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자사의 생수를 취급하는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한 사례
사업활동 방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당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4.1 부당지원행위 참고)

1.6.3. 법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해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과징금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4%이내,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단, 부당지원행위 제외)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행위, 부당지원행위는 제외) ·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분쟁조정 신청, 신고 등을 한 사업자에게 보복조치 시 양벌규정 적용 대상)

1.6.4. 관련 사례

■ J약품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24.11)(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법위반 내용

J사는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채택이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의 방법들을 이용해 249,956천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였다.

① '상품권깡'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 제공

-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은밀한 방식을 사용하여 의료인들에게 접대할 자금을 마련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약 5억 6,300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②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가장한 경제적 이익 제공

-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90회)하거나, 학회 지원(16회), 강연 의뢰(4회) 명목으로 위장하는 등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숙박 및 회식 비용을 제공하였다.

③ 기타 경제적 이익 제공

- 의료인들에게 총 38,760천원에 달하는 각종 음식 배달, 물품 등을 제공하였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총 3억 원)





범위반 내용

K사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① 최소 유통마진 보장 ② 연 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 영향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 결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15,420천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및 시행령 제52조 [별표] 제6호라목(불이익 제공) →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과징금(283백만 원)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동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구입강제
- 이익제공 강요
- 판매목표 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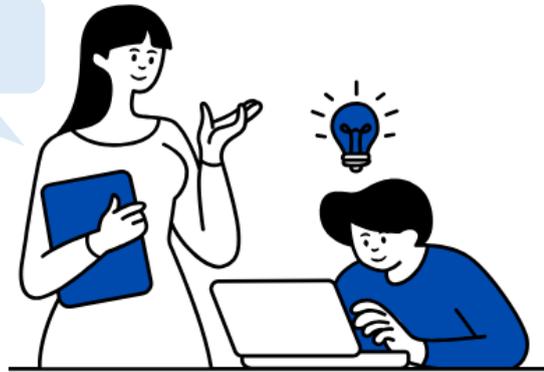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거래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 회사에게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1.6.5. Q&A

함께 알아보기



Q) 집단적 차별취급과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일한 규제 아닌가요?

A)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차별취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합니다.

Q)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이익제공의 상대방에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기존 거래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됩니다.

Q) A회사는 자회사인 B회사, 자회사가 아닌 저희 C회사와 각각 주택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는 지체상금 부과조항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저희 C회사에게는 설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A) 지체상금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독립된 거래주체인 자회사와 비자회사 간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자회사에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A회사의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을 지정하는 위탁매매관계도 거래상대방 제한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나요?

A) 상법상 위탁매매관계는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제한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하나요?

A)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구별됩니다.

Q) 부당한 고객유인에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이익 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합니다. 제공되는 이익에는 적극적 이익의 제공 뿐만 아니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 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 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1.6.6. DO&DON'T



DO(허용되는 경우)

거래거절의 정당한 사유

- ①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 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③ 사업자들이 사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④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별취급의 정당한 사유

- ① 가격차별이 거래수량, 운송비, 거래상대방 역할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② 당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의 정당한 사유

- ① 하자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등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 내에서 염매(싸게 판매)하는 경우
- ②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하는 경우
- ③ 신규 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하는 경우
- ④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에 있거나 막기 위해 염매하는 경우
- ⑤ 계속적 또는 일시적 염매, 부당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⑥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의 정당한 사유

- ① 부당한 이익제공(제의) 또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강제의 정당한 사유

- ① 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조건부 거래의 정당한 사유

- ①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활동방해의 정당한 사유

- ① 기술을 부당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거래처 이전을 방해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기타의 사업활동을 방해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DON'T(허용되지 않는 경우)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②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③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하는 행위
- ④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거나 종래 거래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시,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차별취급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 면에서 현저히 우대하여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③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④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⑤ 합리적 이유 없이 복수의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② 합리적 이유 없이 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 ③ 합리적 이유 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④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③ 사업자가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④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미끼상품)
- ⑤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⑥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인기 상품 판매 시 비인기 상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② 고가의 기계 등을 판매하면서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 ③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④ 자기 또는 계열회사 상품을 임직원에게 할당하면서 판매실적 관리,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⑤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의 판매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⑥ 자신의 계열회사가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⑦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목표량을 달성하지 않을 경우 거래물량 축소 등
- ⑧ 불이익 또는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②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③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판매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제재를 가하는 행위
- ⑤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⑥ 계약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 ⑦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⑧ 계약서 상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⑨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⑩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⑪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⑫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⑬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또는 판매 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광고 시 사전합의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
- ②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 ③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하는 행위
- ④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을 취급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⑤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와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에게 각각 특정 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③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④ 거래처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 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 ⑤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 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⑥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 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 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1.6.7.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귀하가 아래 확인사항에 대해 'Y'를 체크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및 필요 시 시정 또는 보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 개시 단계] 확인 사항	Y/N
<p>단독으로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고 있습니까?</p>	
<p>거래개시 과정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가격 또는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p>	
<p>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 조건, 거래내용 등에 있어서 차별을 설정하고 있습니까?</p>	
<p>자신의 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와 동시에 거래를 개시하면서 비계열회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까?</p>	
<p>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제외)하고 있습니까?</p>	
<p>경쟁사업자에 대한 영업, 품질, 기술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당해 사업을 수주하고 있습니까?</p>	
<p>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해지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까?</p>	
<p>자신이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하고 경쟁사업자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곤란한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p>	

[거래 개시 단계] 확인 사항	Y/N
자신의 상품에 대한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소매업자를 지정하거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쟁사업자의 핵심인력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특정시설을 다른 사업자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2) [거래 계속 단계] 확인 사항	Y/N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습니까?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면서 경쟁 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 중 일부 사업자들에 대하여 할인율, 수수료,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유리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계약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차별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계열회사가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러한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및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퇴출 및 저지시킬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을 계속하여 상품이나 용역에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품을 1회 또는 단기간(1주일 이내)에 걸쳐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경쟁사업자나 신규진입자의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 및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하고 있습니까?	

[거래 계속 단계] 확인 사항	Y/N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자신의 제품을 우선하여 판매하도록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 내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경쟁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입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인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을 고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비율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에 사업자가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수리 및 보수는 오직 자신과 거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한하여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거래 계속 단계] 확인 사항	Y/N
거래상대방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의 핵심인력을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합니까?	
거래처 이전 의사를 밝힌 거래상대방에게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 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거래처 이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고 있습니까?	

(3) [거래 종료 단계] 확인 사항	Y/N
자기의 제품과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거래상대방이 정당하게 거래종료를 요청함에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종료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1.6.8. 법조문(「공정거래법」제45조)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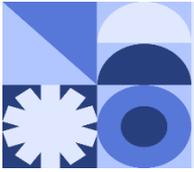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하도급법」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하도급법」이란?



정의	정식명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특정한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특별법임
제정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
용어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중소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다른 중소기업(수급사업자)보다 많은 경우)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 하도급거래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 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 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원사업자 의무사항(9개)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하도급대금 지급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국신용장 개설	관세 등 환급액 지급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원사업자 금지사항(13개)	부당한 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금지	
	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	
발주자 의무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수급사업자 의무, 준수 사항	서류보존	건설 하도급대금 계약 이행보증
	신의성실이행,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금지	



2.1.1.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알아보는 「하도급법」(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풀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일을 맡기는 것

수급사업자는 그 일을 수행한 뒤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인도하며
그 대가로 하도급 대금을 받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계를 보여드리는

하도급거래

원사업자A
“타이어 제조를
사업자B에게 맡겨요”

수급사업자B
“원사업자A가 맡긴
타이어 제조해 납품해요”

공정거래위원회

2.1.2. 주요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 에게 발급하여야 함
- 전자서명 및 전자서면도 포함되며 제조는 작업시작 전, 공사는 착공 전, 용역은 용역수행 전 발급하여야 함

구분	내용
서면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품명·수량·대가 및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p>서류의 보존 (3년)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수령증명서 ·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대금 지급일 · 지급 금액 및 지급수단 · 선급금, 어음 할인료, 수수료, 관세 등 환급액, 지연이자의 지급일 및 지급금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제한 경우, 제공한 원재료 등의 내용, 공제일·공제금액·공제사유 · 감액한 경우, 감액 사유·기준·대상 물량·금액·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본 ·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금액 및 사유 · 수급사업자 등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p>서류의 보존 (7년) :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권리 귀속관계·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명칭 및 범위·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본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수급 사업자 :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 요청 가능
- 원사업자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선급금 지급 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15일 초과지급 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15.5%)지급
-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지급 시 15일이 초과한 시점부터 어음의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 수단 상환기일까지, 어음 할인료(연 7.5%) 또는 어음대체수수료 지급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결정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법정지급기일의 결정

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지 않은 경우

구분	내용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경우	약정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되는 날

②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1) 현금 지급 시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text{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leq \text{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2) 어음 지급 시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교부 금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15.5%) 지급, 60일이 초과한 시점부터 어음의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 까지 어음할인료(연 7.5%) 또는 어음대체수수료 지급

2.1.3. 주요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특약의 금지

- 서면에 미기재된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구분	내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하여 대금 결정 · 협조 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 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대금 결정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

	<p>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 결정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 결정
--	---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

구분	내용
부당한 위탁취소로 간주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 부당반품의 금지

-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금지

구분	내용
부당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감액 금지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구분	내용
부당감액으로 간주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는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서면 교부
-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의무적 체결

구분	내용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간주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금지

구분	내용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금지

구분	내용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보복조치의 금지

- 다음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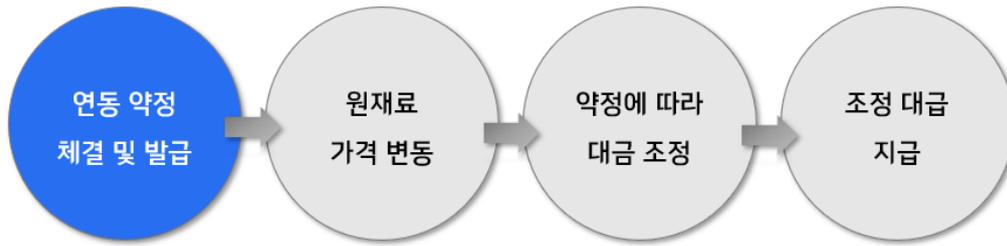
구분	내용
해당 행위 시 불이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탈법행위의 금지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

■ 하도급 연동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 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구분	내용
적용대상	·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적용
원재료 정의_범위	·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 · 천연재료(금, 철, 구리 등), 화합물(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등), 중간재(자동차 부품, 기계부품, 강철, 변압기, 반제품 등) 등

-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구분	내용
목적물 등의 명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기준지표	·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원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조정주기	·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2.1.4. 법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 해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상습 법위반 사업자명단 공표	· 3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3년간 벌점 5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3년간 벌점 10점 초과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 허위자료 제출자 : 사업자(단체) 1억 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 사업자(단체) 2억 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5천만 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요구한 자 : 원사업자 5천만 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500만 원 이하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및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를 를 위반하여 입찰금액, 낙찰자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 1,000만 원 이하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 : 5,0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한 자 : 원사업자 500만 원 이하 ·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하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금지 위반자: 3억 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및 경영간섭, 탈법 행위금지 위반자: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적용 대상)

손해배상 책임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 보복조치 : 손해의 3배 이내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손해의 5배 이내

2.1.5. 관련 사례

■ F사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24.11)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법 위반 내용

F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 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탁하면서 '22.9월 이전까지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법정 기재사항 및 양사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2.9월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해당 계약서에 여전히 제조위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법정 기재사항 및 양사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하도급법」제 3조 → 과징금(79백만 원), 지연이자(11,878,869원)





법 위반 내용

Y건설사는 '20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 20개 수급사업자와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인 허위의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실제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는 양 당사자 날인 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Y사 자신이 보관하였다. 또한, Y사는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실낙찰계약금액과 하도급 통보용 계약 금액뿐 아니라, 허위서면 발급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것이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하여 감액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 이행 약속서를 별도로 징구하였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대금(“UP단가“)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이다.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하도급법」 제3조 → 시정명령, 과징금 (48백만 원)



함께 알아보기



Q)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금금을 받았으나 당사는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선금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에서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선금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법 제13조제11항은 예외적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같은 조 같은 항에 나열된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6조는 법 제13조 제1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법 제6조는 중견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Q) 선금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A)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 내에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과합니다.

Q) 저희 회사는 제조위탁을 A회사로부터 수급 받아 목적물을 생산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보내둔 상태며, 검사 결과를 원사업자로부터 통지받아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와 그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이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검사기준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Q) A회사는 비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나중에 인기제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구두)하였으나 정작 손실의 일부만을 보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기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할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인 A회사는 저희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두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저희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가요?

A)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전형적인 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Q) 목적물 제공 과정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토록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물품 구매강제행위에 해당하나요?

A)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 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Q)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현금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Q)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약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나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기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행위입니다.

Q)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법 제3항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C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 자료 보호 의무가 없고, C에게 기술유용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가 C의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C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A에게 기술유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는 특허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포괄적으로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제조위탁을 요구하고 그 발생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특약에 해당하나요?

A)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부당한 경영간섭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Q) 저희 회사는 수급사업자로 A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또는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7. DO&DON'T



DO(허용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에 해당

- ①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
- ②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③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물품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 확인서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미해당

- ①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닌 경우

- ①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일방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가 공사현장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등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자재·장비대금을 미지급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 취소로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의 정당한 사유

-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 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②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 수 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 · 유용행위에 미해당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미해당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 복리 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DON'T(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 미발급 또는 불완전 서면발급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 ②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 ③ 추가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 미발급으로 봄
- ⑤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원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또는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추가적인 협의 없이 일방의 의사결정을 통해 임시단가 그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원사업자의 판매량 감소·사양 변경·모델 단종·내부 자금사정 악화 또는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등 원사업자의 경영 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자신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 사업자에게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고 수급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 음에도 위탁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한 후 목적물 등이 위탁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부당한 수령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계약서면에 위탁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②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목적물 등이 위탁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성능의 하자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단축을 통보한 후 납기에 목적물 등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④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 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목적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목적물 등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⑦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⑧ 구두로 추가 위탁을 한 후 목적물의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계약서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며 위탁사실을 부인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⑨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외국 수입 업자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 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 단종·판매 부진·재고 증가·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 위축·경제 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 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 하는 행위
- ② 검사기준·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기준·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 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 하지 아니한 검사기준·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 ③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 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⑥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었음 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⑦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 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인해 이미 납부하거나 지급한 과징금,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 ②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그만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③ 구두로 납기 등을 연기한 후 당초 서면 계약서 상의 납기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감액하는 행위
- ④ 원자재의 가격이 목적물을 발주 또는 납품할 당시까지는 변동이 없었으나, 발주 또는 납품 이후에 하락 하였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감액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전년도의 임직원 임금인상, 신규투자증대, 판매부진, 환율변동 등에 따른 적자폭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계약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 ⑥ 원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요구 · 유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 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 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④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 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 ②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 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 ③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폐기물·소음·진동·먼지·오수·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약정
- ④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

- ⑥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표기하지 않고 견적 단가에 포함하여 견적 하여야 한다는 약정
- ⑦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 ⑧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 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내용의 확인을 일체 요청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
- ⑩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의 소유권은 모두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약정 (단,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위탁 등은 제외)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② 수급사업자의 생산 품목·시설 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③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 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 없이 ⑤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 인력, 재료 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

기타 하도급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원사업자가 기존의 생산계획 등에 따라 생산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거나 발주자로 부터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예상 물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 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하도급 거래상의 물량과 비교하여 발주물량을 축소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 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간 지급·제공하던 원 재료, 자재 등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동종업계 다른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법 제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수주기회 제한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④ 기타 합리성·객관성이 결여되거나 일반 적인 거래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수단·방법을 활용해 법19조 각 호의 신고, 조정신청, 조사협조를 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⑥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

2.1.8.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귀하가 아래 확인사항에 대해 'Y'를 체크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 및 필요 시 시정 또는 보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확인 사항	Y/N
귀사의 거래상대방(이하 '수급사업자')은 중소기업자입니까?	
귀사가 중소기업자라면, 귀사가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습니까? ※ 단, 귀사의 직전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제조하도급)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귀사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귀사의 현재 거래 또는 향후 수행할 거래는 (제조하도급) 물품 제조·판매·수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을 위한 물품(범용품 제외)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에 해당합니까?	
[계약체결 단계] 확인 사항	Y/N
귀사는 하도급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귀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 하에 제작된 계약 양식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귀사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귀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 등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포함합니까?	
귀사는 위탁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격)보다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합니까?	
귀사는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귀사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합니까?	

[계약수행 단계] 확인 사항	Y/N
귀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까?	
귀사는 위탁 이후 이를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발주량 감축 등)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수행하여 납품한 위탁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합니까?	
(귀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귀사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귀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물품 구매대금이나 장비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귀사가 구입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귀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사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귀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에 대한 협의 및 서면 교부 없이 구두로 요청하고 있습니까?	
귀사가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받는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대금 조정 없이 기존 하도급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사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①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②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③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금지급 단계] 확인 사항	Y/N
귀사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납품 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합니까?	
귀사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까?	

<p>귀사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p>	
<p>귀사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귀사의 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 당좌거래 정지 등)이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p>	
<p>[계약종료 단계] 확인 사항</p>	<p>Y/N</p>
<p>귀사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 결과를 통지합니까?</p>	
<p>귀사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였을 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p>	
<p>귀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p>	

2.1.9. 법조문(「하도급법」 제3조~제20조, 제22조)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5., 2018. 1. 16., 2019. 11. 26., 2020. 6. 9., 2023. 7. 18.>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신설 2023. 7. 18.>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7. 18.>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⑧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⑨ 원사업자는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⑩ 제8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9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⑪ 제8항의 통지 및 제9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 1. 25., 2023. 7. 18.>
- ⑫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5., 2023. 7. 18.>
- [전문개정 2009. 4. 1.]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29.]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본조신설 2013. 8. 13.]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신설 2025. 4. 1.>

[본조신설 2013. 8. 13.]

[시행일: 2025. 10. 2.] 제3조의4제3항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전문개정 2009. 4. 1.]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6조(선금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

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1.]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신설 2017. 10. 31.〉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既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4. 1.]

제11조(감액금지)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29., 2013. 5. 28.>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신설 2011. 3. 29.>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2011. 3. 29.>
-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1. 3. 29.]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4. 1.]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2021. 8. 17.>
 -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2021. 8. 17., 2022. 1. 11.>
 -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 [본조신설 2010. 1. 25.]
 - [제목개정 2011. 3. 29.]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 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개정 2015. 7. 24.〉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 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신설 2015. 7. 24., 2016. 3. 29., 2018. 1. 16., 2020. 12. 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4. 1.]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 수)}} \times 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 수)}} \times \frac{\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수)}}{\text{지급주기(개월수)}} \times 2$$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하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 1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개정 2010. 5. 17., 2014. 5. 28., 2016. 12. 2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⑥ 제5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⑦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2014. 5. 28., 2016. 12. 20.>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5. 28., 2016. 12. 20.> [전문개정 2009. 4. 1.]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전문개정 2009. 4. 1.]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0. 1. 25., 2019. 11. 26.>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1. 25.>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5.>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개정 2010. 1. 25.>
[전문개정 2009. 4. 1.]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11. 26., 2022. 1. 11.>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8. 1. 16., 2022. 1. 11., 2023. 7. 18.>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2022. 1. 11.>

④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⑦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이가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8., 2022. 1. 11.>

⑧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2022. 1. 11.>

⑨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⑩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

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5. 28., 2022. 1. 11.〉

⑪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회의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3. 5. 28., 2022. 1. 11.〉

1.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1.]

[제목개정 2018. 1. 16., 2019. 11. 26.]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7. 4. 18.〉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3., 2017. 4. 18.〉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9. 4. 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신설 2018. 1.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4. 1.]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9., 2013. 5. 28., 2015. 7. 24., 2018. 1. 16., 2022. 1. 11.>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전문개정 2009. 4. 1.]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3. 7. 18.>
-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3. 7. 18.>

[전문개정 2009. 4. 1.]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7. 24., 2016. 3. 29.>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2021. 8. 17.>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4.>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4. 1.]

Ⅲ. 부록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 1.1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
 - 1.2 위원회 심결제도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2. 준법통제기준
3.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4. 내부거래 관리 규정
5. 부패방지정책
6.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7.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8.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9.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1.1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

1.1.1 사건처리 절차 개요



1.1.2. Step1 인지도단계

- 위반혐의의 인지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함
 - 신고 : 피해자 등 이해당사자가 신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전달
 - 제보 :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이외의 제3자가 법 위반사실을 전달
 - 직권인지 : 공정위가 문제를 인지해 조사하는 직권

구분	내용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신고서 수령 후 즉시) : 사건절차규칙 제10조에 따른 서면신고 시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온나라에 접수 · 사건등록(신고접수 후 10일 내) : 조사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민원회신(신고접수 후 14일 내) : 다음의 사유인 경우 민원 회신(사건처리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상 적용대상 요건(사업자 등) 미충족 - 법령 상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거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가 명백 - 피신고인이 사망 또는 폐업한 경우 - 적시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취하한 경우(회신의무 없음)
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접수(신고서 수령 후 즉시)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온나라, 국민신문고 제보 문서를 등록하여 제보 접수 · 사건등록(제보접수 후 10일 내) : 사건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직권인지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자 또는 제보기관에 사건등록 사실 서면 통보 · 제보등재(제보접수 후 30일 내) : 사건화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제보 및 증거가 확보되면 사건으로 등록(사유 발생 후 10일내) - 등재 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시스템 삭제 (과장결재) - 제보 등재 사실은 제보자 또는 제보기관에 통보
직권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등록 : 사건절차규칙 제10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자료요청일,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 내 조사 계획서 첨부하여 등록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p>(미착수 보고 심사관 전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불개시(사건절차규칙 제12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 후 15일 내 신고인 및 피심인에게 통보(단, 신고취하의 경우에는 제외) -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내(사건처리수칙) · 이첩(사건절차규칙 제11조의4), 질의·회신

1.1.3. Step2 심사단계

구분	내용
조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 조사(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 사건심사 착수 보고 : 심사불개시 사유가 아닌 경우(사건절차규칙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건 :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내(자료보완 기간 제외, 1회 연장 가능) - 직권인지 사건 :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내(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 전결로 연장 가능) - 착수보고 후 15일 내 피조사인에게 서면 통지(자료 조작 등이 우려되는 경우 제외) - 착수보고 후 3개월 내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 및 피조사인에게 서면 통지
심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 : 사건담당자와 과장이 심사관에게 조사상황과 조치수준 검토의견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내, 직권사건은 조사개시일로부터 90일 내 - 공동해위 사건은 각 기산일로부터 120일 내
심사관 전결	<p>(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 검토보고서 작성 → 15일 내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절차종료(사건절차규칙 제46조 각 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불개시 사유(사건절차규칙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한 경우 -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 · 무혐의(사건절차규칙 제47조 각 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종결처리(사건절차규칙 제48조 각 호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에게 사망, 해산, 파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법 위반혐의가 재산상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 · 조사 등 중지(사건절차규칙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일시적 폐업,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소재불명, 국외 사업자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조사 등 중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 가능 · 경고(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건 중 심사과정에서 시정조치 등을 이행한 경우 - 사건절차규칙에 따른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시정권고(사건절차규칙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

	<p>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이후 최초 범위위반행위를 한 경우 - 약관법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p>· 과태료(사건절차규칙 제53조 각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건)</p> <p>· 고발(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3항 각 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관법 제32조 위반, 방판법 제51조~제56조 위반, 전자거래법 제40조~제43조 위반, 할부거래법 제48조~제51조 위반 <p>· 사무처장 전결(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1항 단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시장규모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의 경우로 심의 절차 종료 또는 무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건절차규칙 제51조 제1항의 시정권고 사건
--	--

1.1.4. Step3 심의·의결 단계

구분	내용								
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에게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 조회(소회의 사건) · 다음의 경우에는 수락여부 미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관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판법, 전자거래법 고발사건 제외) 또는 과징금인 경우 - 피심인이 수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 -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 수락 시 약식절차 진행(사건절차규칙 제59조~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보고서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심의 부의 - 서면 심의 원칙 / - 심사관이 약식의결서 작성 								
위원회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상정(사건절차규칙 제29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심사보고서와 그 첨부자료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였을 때 심의절차를 개시한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p>〈위반행위 유형별 안건상정 기한(사건절차규칙 제10조의4)〉</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50%;">위반유형</th> <th style="width: 50%;">상정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시지남용, 부당지원</td> <td>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td> </tr> <tr> <td>공동행위</td> <td>조사개시일로부터 13개월 이내</td> </tr> <tr> <td>기타 나머지 위법행위</td> <td>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td> </tr> </tbody> </table> <p>▷ 자료보완 기간은 제외, 부득이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로 연장 가능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문서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회의(사건절차규칙 제4조), 소회의(사건절차규칙 제5조) 	위반유형	상정기한	시지남용, 부당지원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	공동행위	조사개시일로부터 13개월 이내	기타 나머지 위법행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위반유형	상정기한								
시지남용, 부당지원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								
공동행위	조사개시일로부터 13개월 이내								
기타 나머지 위법행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1.1.5. Step4 결과통지·불복 단계

구분	내용
결과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서 작성(합의일로부터 35일내, 무혐의, 심의절차 포함) - 의결서 정본 피심인 송부(합의일로부터 40일 내)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 행정소송(처분 통지받은 날, 이의신청 있는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 집행정지 ·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등에 대해 재신고, 헌법소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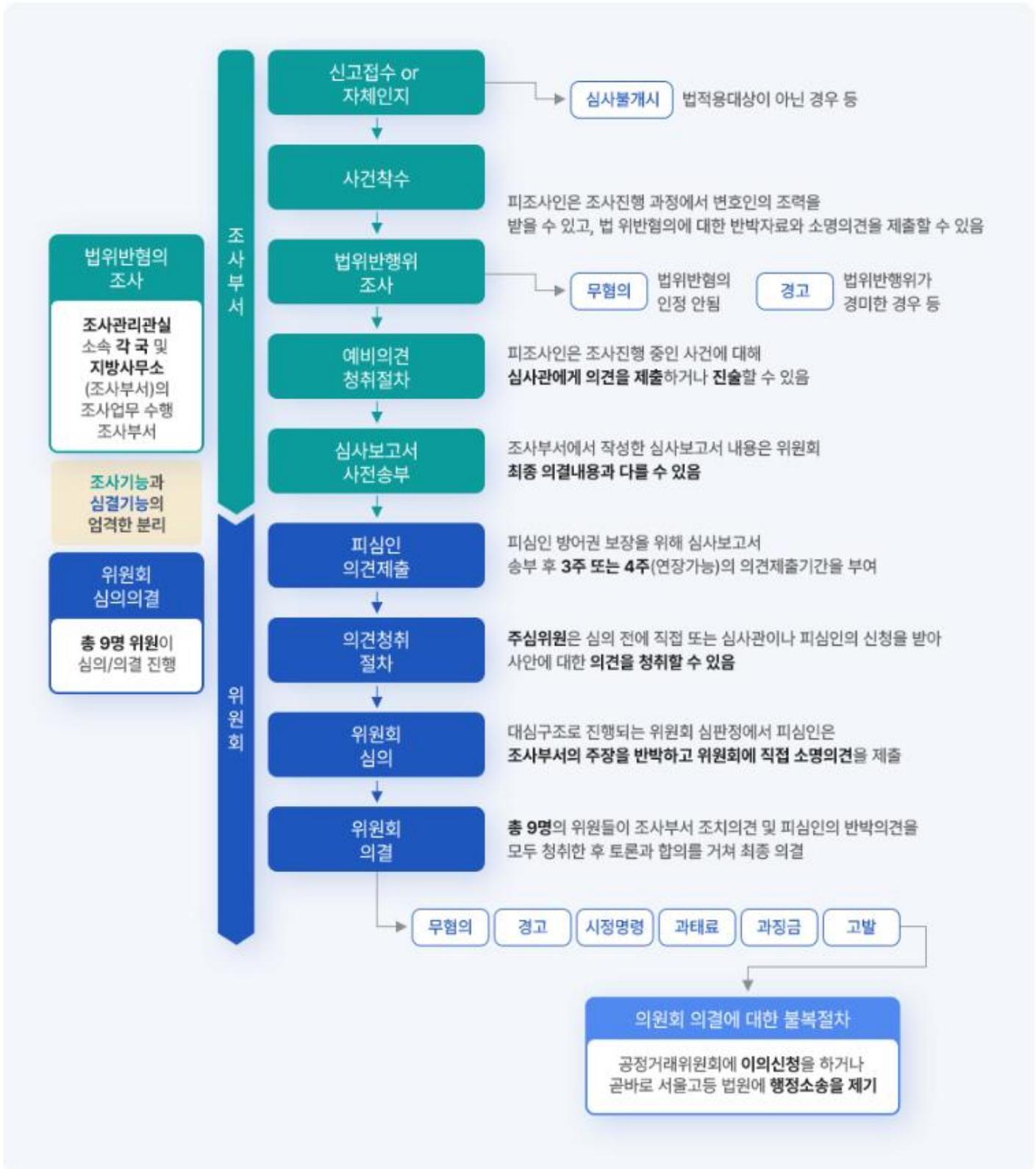
1.2 위원회 심결 및 사전심사 청구제도

1.2.1. 위원회 심결 제도

■ 심판 기능으로서의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위원장	상임위원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 2, 제42조제1항)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제2항)
소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등의 제·개정 · 이의신청의 재결 ·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건 · 승인·인정·인가사항 · 집행정지의 결정 · 과태료 ·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 약관법상 시정 요청)



■ 동의의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소비자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관련 법률

- 공정거래법(제90조), 하도급법(제24조의10), 가맹사업법(제34조의3), 대규모유통업법(제34조의3), 대리점법(제24조의2), 표시광고법(제7조의2), 방문판매법(제50조의3)

■ 효과

- 소비자 : 시정조치로는 어려운 가격 인하·손해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가능
- 사업자 : 사업상 불확실성 조기 제거, 범위반 사업자의 이미지 훼손 방지
- 정부 : 피조사 사업자 동의를 얻어 원활한 법 집행, 행정비용 절감

■ 절차

- ① 피조사 사업자의 동의를결 신청, ② 동의를결 개시여부 결정, ③ 잠정 동의를결안 작성 및 결정, ④ 의견수렴 절차[이해관계인 의견수렴(30일 이상 60일 이하),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검찰총장 협의], ⑤ 동의를결 확정

1.2.2. 사전심사 청구제도 개요

- 사전 심사청구제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 포함, 이하 동일)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서면 회답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답은 공정위에 공식입장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 기속력이 없는 기존의 일반상담 (공정거래 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 법 적용에 관한 사적의견 제시 등)과 다릅니다.



■ 제도 도입 취지

-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guide로 제공됩니다.
- 법적 안정성 훼손, 기업 손실 등 사후 시정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사업자는 제도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후시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당해사업자의 손실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심사청구)하는 자발적인 공정거래질서 형성 효과가 기대되며,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공정위에 문의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이 강화됩니다.
- 특히 민간법률자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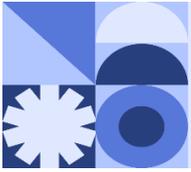
 <p>투명성/예측 가능성</p> <p>심사결과를 공개 기업활동 guide로 제공</p>	 <p>사후 시정 문제 X</p> <p>법적 안정성 훼손, 기업 손실 등 문제점이 해소</p>	 <p>자발적 참여</p> <p>자발적인 공정거래질서 형성 효과가 기대</p>	 <p>손실 예방</p> <p>사후시정 어려운 소비자, 사업자의 피해방지</p>	 <p>동반자 역할</p> <p>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p>
---	--	---	--	---

■ 사전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이하 ‘공정거래법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의 청구

구분	내용
청구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양당사자가 함께 청구하거나 한쪽당사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상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심사의 대상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개별적 행위이다. 2. 추진계획이 불명확한 행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위 및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다른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사전심사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승인기관이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전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의 대상행위에서 제외한다.
청구방법	사전심사의 청구인은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지방사무소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료제출 의무	청구인은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답기한	<p>1. 사전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청구서에 기재된 대상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회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회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	<p>사전심사의 대상행위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답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이미 공개한 사전심사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서비스 포함)의 효능, 성능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예 : 표시 광고) 현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에 개입하게 되거나, 위원회의 조사, 심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회답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답의 효력	<p>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청구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회답의 철회	<p>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답을 한 경우라도, 청구인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검토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실행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등 회답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회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후가 아니면, 당해 대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p>
사전심사의 공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2. 청구인이 공개의 연기를 희망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심사의 공개를 연기한다. 공개시기는 청구인의 희망과 연기사유 소멸시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른 의무와의 관계	<p>사전심사 청구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된 다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p>
재검토 기한	<p>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2. 준법통제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 무수행을 도모하고 회 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 정·시행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 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 다.
2.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

- ① 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 ②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4 조 (제정 및 개정)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장 준법통제환경

제 5 조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 원칙)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은 준법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 6 조 (각 기관의 역할)

- 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결정

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를 감독한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 통제 체제를 구축·정비·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한다.

제 7 조 (준법지원인의 임면)

- 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③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임기 중 해임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해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이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 ①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 ③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1.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7.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8.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 시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 ④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 3 장 준법통제활동

제 12 조 (법적 위험의 평가)

- ①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 13 조 (법적 위험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각 관련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5 조 (일상적인 준법 지원)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계약체결 등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제기되는 법적 위험 또는 준법 관련 쟁점에 관하여 준법지원 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

- ①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준법 교육을 포함한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각 부서는 효과적인 자율 준법 점검을 위하여 점검사항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제 17 조 (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 ①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 하여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 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 점검이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 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 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준법 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 18 조(내부 제보)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내부 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 19 조 (위반 시의 처리)

-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개선·시정·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개선·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제 20 조 (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준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 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통합 정보 관리장치를 마련한다.
- ③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한다.

제 4 장 유효성 평가

제 21 조 (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①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준법점검 및 보고체제·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22 조 (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①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②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제 5 장 기타

제 23 조 (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 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 24 조 (세부사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자율준수프로그램 (CP)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원칙 및 사업 관련 제반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

제 2 조(적용범위)

회사의 모든 임직원, 대리인 및 협력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 ① “사업 관련 법 등”이란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각종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 ② “자율준수”란 회사의 임직원이 사업 관련 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규제당국 등”이란 사업 관련 법 등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20.>
- ④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이란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한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주관부서”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2. 12. 15.>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선임)

- ① 회사는 효율적인 CP의 운영을 위하여 역할과 임무에 상충되지 않는 자를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한다. <개정 2022. 6. 7., 2022. 12.15.>
- ② 자율준수관리자 결원 시 그 후임자 선임까지 자율준수관리자 소속 조직의 차상위 직급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독립적 업무수행)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1. 자율준수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자율준수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사업관련 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이 규정의 개정안 발의
7. 기타 이사회가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 7 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시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과 관련된 계획 수립
2.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3. 자율준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4. 사업 관련 법 등 및 이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5. 자율준수 행동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6. 자율준수 활동 상황에 기록 및 관리
7. 규제당국 등과의 업무 협조
8. 내부고발시스템 개발 및 관리

9. 주관부서의 통솔 및 관리 <개정 2022. 12. 15.>

10. CP의 운영과 관련된 대외 인증·평가 업무 수행(CP 등급평가, ISO 37001, ESG 등)

1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에 대한 불비나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업 관련 법 등이나 이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CP의 운영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 10 조(전담부서)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주관부서를 두며, 자율준수관리자는 주관부서에 대한 지시 및 통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 6. 7., 2022. 12. 15.>
- ② 주관부서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여한 책임과 권한에 따라 성실하게 CP를 운영한다. <신설 2022. 6. 7., 2022. 12. 15.>
- ③ 주관부서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 2 절 CP 위원회 <본절신설 2021. 9. 13.>

제 11 조(CP 위원회 구성)

- ① CP 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직원의 포상과 제재, 기타 회사의 CP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 ② CP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부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사안에 따라 위원 구성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두며, 안건에 따라 배석자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2023. 12. 29.> [본조신설 2021. 9. 13.]

제 12 조(CP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 ① CP 위원회는 반기 1 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2 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4.>

② CP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에 대한 심의·의결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재발 방지 등 필요 조치의 권고·자문
3.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공유 및 협조 논의
4. CP 관련 사내 규정·지침 등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5. CP 모범 임직원의 포상 또는 위반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심의
6. 기타 회사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부 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본조신설 2021. 9. 13.]

제 13 조(CP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주관부서는 CP 위원회의 소집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개최 1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2. 12. 15.〉
- ② CP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1. 9. 13.]

제 3 절 임직원

제 14 조(의무)

- ① 임직원은 이 규정 및 사업 관련 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 ③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이 규정, 사업관련 법 등에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자율준수관리자(또는 주관 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15.〉
- ④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 또는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또는 주관부서)의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 3 장 CP 의 운영

제 15 조(자율준수 의지의 선언)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준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의지를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16 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CP의기준과 절차 및 사업 관련 법 등을 포함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한다.
- ③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모니터링 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1 회 이상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대한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험평가 및 임직원의 CP 준수여부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관부서 및 유관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사전업무협의체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0.>
 - 가. 제 14 조 제 5 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 나.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위반 및 부패 관련 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시상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상 및 제재조치의 기초가 된 평가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향의 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신규 입사자와 승진자는 신규 입사 및 승진 확정 후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규정 및 사업 관련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구매, 영업 등 사업 관련 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 및 CP 위반자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4.>
- ⑤ 임직원 대상 교육은 집합 교육, On-line 교육 및 관련 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법령상 중요한 변경 및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의 교육 이수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고 미이수자 또는 CP 위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4.>
- ⑦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은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 19 조(사업 관련 법 등 위반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정권고
 - 2. 사유서 제출

3. 경고

4.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및 의견 제시

② 제재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다.

제 20 조(포상)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의 준수여부 점검결과가 우수한 자
2.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3. 자율준수 교육이수 우수자
4. CP 관련 우수 제안자
5.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관련 퀴즈 응모 혹은 시험 응시 우수자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하는 자

② 포상 대상자 및 규모는 대표이사 보고 및 승인에 따라 결정한다.

제 21 조(내부 신고)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수단을 통하여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V-GMP : Better KOLMAR – 윤리경영 위반행위
2.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8 길 61(내곡동) 자율준수관리자 <개정 2022. 12. 15.>
3. 홈페이지 제보코너 : <http://www.kolmarholdings.co.kr/kor/> <개정 2021. 9. 13.>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전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익명 신고의 경우에는 익명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절차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조치, 회복 및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제 22 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 ③ 보관에 필요한 내용 및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문서 등의 작성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3 조(운영성과 및 유효성 평가)

- ① CP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승인 하 회사 내의 CP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 24 조(공시)

회사는 CP의 운영 상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제 25 조(세부지침에 대한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개정

제 26 조(개정의 필요성)

사업 관련 법 등의 개정 및 회사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변화된 사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 27 조(개정절차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법규 등 개정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대한 보고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② 전면개정의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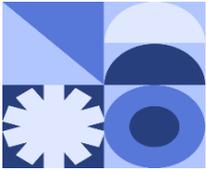
- ①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21 년 9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은 2022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규정은 2023 년 6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규정은 2023 년 12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규정은 2024 년 6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규정은 202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제재)

이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4. 내부거래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콜마홀딩스(주)(이하 '콜마홀딩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콜마홀딩스'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콜마홀딩스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공정거래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인 :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
2. 특수관계인 :
 -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 2) 동일인관련자
 - ①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계열회사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5~6촌 혈족 및 4촌 인척,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모 생모
 - ②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계열회사('사외이사 지배회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독립경영요건 불충족 시 포함)
 -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상업사용인 등)
 -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3. 기업집단 : 동일인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 등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
 - 1) 지분율 기준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생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 2) 지배력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 :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④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⑤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속경영사무국 ESG(CP)팀'(이하 '주관부서')을 통하여 거래 유형을 판단 받을 수 있다.

-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 거래
- ②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거래
- ③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
- ④ 상품·용역 거래
- ⑤ 인력 제공
- ⑥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통행세 거래

제4조(회사의 의무)

콜마홀딩스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본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형의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반드시 '사전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콜마홀딩스 소속 부서가 기안을 상신하는 경우에는 소속 팀장 결재 후 콜마홀딩스 결재라인을 따른다.

(● : 결재, ○ : 합의)

구분	소속 회사			클마홀딩스		
	소속 팀장	내부거래 관리 부서*2)	인사 부서	지속가능경영사무국 ESG 팀장	인사총무팀	지속가능경영사무국 사무국장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거래						
유가증권·부동산·무체 재산권 등 자산 거래	●	○	-	●	-	●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						
상품·용역 거래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거래						
인력의 제공	●	○	○	●	○	●

*1) 상품 : 건당 500,000,000원 이하의 거래는 적용하지 아니함

*2) 단, 소속 회사 내부거래 관리 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2장 내부거래의 원칙과 절차

제5조(내부거래의 원칙)

1. 내부거래는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거래상대방 선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 등의 경쟁적인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거래조건 설정 시 거래당사자간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협상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거래조건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체적으로 거래조건 등을 설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임의로 수정 또는 파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철저히 보관한다.

제6조(내부거래의 승인절차)

1. 내부거래 승인 신청은 V-GMP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양식을 통하여 진행한다.
2.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는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이하 '매입회사')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작성 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출회사'가 1개의 동일한 상품·서비스 등을 동시에 다수 '매입회사'에게 제공하는(예 : 정기 IT 서비스) 등의 거래 유형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다수의 '매입회사' 중복된 요청서 작성으로 인해 결재 지연 등의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회사'가 다수의 '매입회사'를 대신하여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입회사'가 그룹웨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작성 주체 및 작성 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3. 승인 요청은 계약서 체결 이전 최소 7일 전까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서 체결 당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단,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승인을 위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 진행 전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승인이 완료된 경우 해당 승인은 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만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거래 건 별로 계약 기간은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으며, ‘매입회사’는 거래 가격, 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재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요청 건 또는 기 승인된 거래 건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입회사’는 이에 따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내부거래 승인 요청 시 필수사항)

1.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① 거래 상대방 및 거래 유형
 - ② 거래 목적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 사유
 - ③ 거래 기간 및 거래 규모
 - ④ 기타 거래와 관련된 주요 사항 일체
2.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결재 요청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반드시 첨부한다.
 - ① 계약서(법무팀 검토 완료본)
 - ② ‘내부거래 체크리스트’[별첨 1]
 - ③ 기타 거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및 자체 검토 자료

제3장 기타사항

제8조(점검 및 보고)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내부거래’ 승인 절차 운영에 관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등 필요 시에는 시정조치, 권고의견 제시 등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제9조(징계)에 따른다. 점검 및 사후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CP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9조(징계)

‘주관부서’ 점검 및 보고 결과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사위원회 회부는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0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은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2021.05.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2025.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부 칙(2025.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다.

별첨 1]. ‘내부거래 체크리스트’

구분	작성 부서(매입회사)	작성자	작성 일자

1. 계약 방식 확인		
문항	입찰	수의
- 관계회사와의 계약 방식은 무엇입니까?		
	▼	▼
	표[A] 작성	표[B] 작성

① 표[A] : ‘입찰’ 계약 검토 항목

번호	문항	예	아니오
1	입찰 조건을 특정 관계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하였는가?		
2	입찰 형식으로 보이기 위해 입찰과 관계없는 회사 또는 입찰 조건을 사전 협의한 회사들을 들러리 세웠는가?		
3	입찰 검토 시 사업비용, 기술력, 전문인력 구성 등이 아닌 주사위 던지기, 제비뽑기 등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4	입찰 결과가 나왔음에도 특정 관계회사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결과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였는가?		
5	관계회사로 입찰 대상 선정 후 입찰 조건과 다르게 관계회사에 불리 또는 유리하도록 조건을 임의로 조정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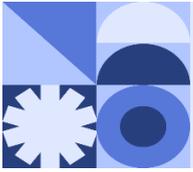
6	입찰 계약서에 대하여 법무팀 검토를 받았는가?		
7	입찰 계약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찰 요건 관련 문서, 회사별 입찰 제안서, 비교 검토/결과 선정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8	향후 공정한 입찰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입찰 조건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는가?		

'입찰' 계약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어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ESG(CP)팀'으로 검토 요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표[B] : '수의' 계약 검토 항목

1	일반문항	예	아니오						
1-1	해당 관계회사 선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였는가? (해당하는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관련 내용은 [별첨 1]을 참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1) 효율성</td> <td>예)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보안성</td> <td>예)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 관계회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긴급성</td> <td>예)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상황임</td> </tr> </table>	(1) 효율성	예)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2) 보안성	예)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 관계회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3) 긴급성	예)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상황임		
	(1) 효율성	예)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2) 보안성	예)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 관계회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3) 긴급성	예)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상황임								
1-2	회사 선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2	가격 적정성 문항	예	아니오						
2-1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 및 조건을 확인하였는가?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부 고시, 법령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근거로 산정 기준에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활용 근거 : (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자료									

2-2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관계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가?		
2-3	비관계회사와 거래조건 비교 시 해당 거래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를 없애거나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진행하였는가?)		
2-4	가격 산정 및 조건 설정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시장 분석 보고서, 외부기관 감정서, 협상 회의록 등)		
3	물량 적정성(‘상품/용역’ 거래 한정) 문항	예	아니오
3-1	비관계회사와 진행 중이던 거래를 타당한 근거 없이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등 이를 관계회사의 물량으로 대체하였는가?		
3-2	관계회사와의 거래 물량은 통상적으로 비관계회사와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만큼의 상당한 수준인가? ▶ 해당 거래액 규모가 상대 관계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3-3	해당 거래물량만으로 상대 관계회사가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상대 관계회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수준인가?		
4	거래단계 적정성(통행세) 문항	예	아니오
4-1	제3자인 비관계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관계회사를 거래 중간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구조를 형성하였는가?		
4-2	관계회사를 중간 단계에 추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가?		
4-3	관계회사는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4-4	관계회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를 제공했는가? (해당 역할 대비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지는 않은지)		
5	일반문항	예	아니오
5-1	수의 계약서에 대하여 법무팀 검토를 받았는가?		
5-2	계약 이후에도 해당 거래조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관계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객관적 근거 하에 공정한 거래조건이 설정되도록 하겠는가?		
‘수의’ 계약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어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ESG(CP)팀’으로 검토 요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패방지정책

제1조 목적

- ①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 「OECD 부패방지협약」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 ① “부패리스크”란 부패행위 및 부패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소를 말한다.
-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③ “비즈니스 관계자”란 회사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④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란 회사가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 ⑤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⑥ “주관부서”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22. 12. 26.>

제3조 적용 범위

- ① 본 정책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본 정책은 모든 사업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제4조 관리 및 점검

- ① 회사는 내부통제, 준법 프로그램이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되고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기적

으로 관리한다.

- ② 회사는 부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패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5조 금품등의 제공

- ①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등을 제공·제안·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금품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 내 정해진 승인 및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며, 특정 금품등의 제공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등을 제공 또는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 정책 및 부패방지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다. 거절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메시지가 오해나 재고의 여지가 없도록 하며, 즉시 주관부서에 그러한 제공 또는 요청이 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6조 기부 및 협찬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름으로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부 또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나 정치적 기부 은폐를 목적으로 기부나 협찬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기부 및 협찬 집행 절차에 관해서는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 비즈니스 관계자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사업체와의 거래를 피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비즈니스 관계자가 회사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명시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비즈니스관계자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면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주관부서는 부패리스크를 검토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2. 12. 26.>

제8조 장부와 기록

회사는 모든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실행 의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한다.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발견된 부패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사규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해당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6.>

제10조 신고 및 보복 금지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②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신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내부신고제도(V-GMP, 우편, 홈페이지 제보코너 등)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6.>
- ③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재조치

임직원이 본 정책 · 사내 규정 또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 ① 이 정책은 2021 년 10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책은 2022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정책은 2025 년 1월 7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석<개정 2022. 12. 26.>

본 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사람이 중심인 콜마홀딩스는 인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가치있는 삶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인간경영, 기술경영, 가치경영 및 책임경영이라는 기업이념을 실현하고 규범준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하나,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어떠한 부패행위 및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셋,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넷,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지배기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갖는다.

다섯,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여섯,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규범 비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일곱,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

1조 목적

대관·대언론 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임직원이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청, 언론 등과 접촉 및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콜마홀딩스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원칙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① 본 가이드라인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라 함은 법규, 행정방침 등을 포함하여 명문화된 모든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공적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람 또는 조직이나 집단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공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③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기부, 후원,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④ “부정한 청탁”이란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법령에 위반되거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⑤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 ⑥ “부패방지”란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 관련 법규의 준수를 철저히 하고, 공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⑦ “주관부서”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부패방지 관련 법규 준수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상기 법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제5조 부정한 청탁의 금지

-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그에 수반하여 금품등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지된다.
- ② 청탁금지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청탁의 상대방인 공직자 등 또는 공무수행사인과의 관계에서 공공성에 의혹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라면 이는 금지된다.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그 내용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고내용을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금품등의 제공

- ① 공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금품등의 제공은 다음과 같이「청탁금지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용되는 기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②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등의 종류별로 준수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5만 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 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 원.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 원(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 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4.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 항목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금품등에 지급에 있어 규정에 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사전에 상의해야 한다.

③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 또는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는 회계관리 방침에 따라 보존한다. 주관부서는 공직자등에 대한 비용 집행의 통보사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상대로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승인 및 보고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첨부1의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관련 Self-Check List’를 첨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의 집행에 대한 결과를 사내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결재 승인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임직원은 첨부2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Self-Check List’를 작성하여 사내 전결 규정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사전에 결재 승인을 통해 보고하고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본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는 각 ‘Self-Check List’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 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제7조 강의 등 사례금 제공 제한

회사는 공직자등에게 그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강연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1시간 또는 1건 당 가이드라인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40만 원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이드라인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공직자 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더라도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개인적인 금품등 제공

회사는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적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대해서는 임직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2021. 9. 6.)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 13.)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6.)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9. 11.)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 1.) 이 가이드라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1].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관련 Self-Check List

- 당월 결과보고서 상 세부 내역 중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를 상대로 집행된 건에 대해 허용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Self-Check 합니다.
- Self-Check 결과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가 1건 이상 발생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Self-Check Point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에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구분		기준														
1	직무관련성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의 관련성														
2	공직자 등	공무원, 각급 학교의 장·교직원, 언론사의 임직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														
3	허용범위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기준(1인당)</th> </tr> </thead> <tbody> <tr> <td>음식물</td> <td>원만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td> <td>5만 원 이하</td> </tr> <tr> <td rowspan="2">선물</td> <td>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td> <td>5만 원 이하</td> </tr> <tr> <td>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및 농수산물상품권·농수산가공품상품권</td> <td>15만 원 이하</td> </tr> <tr> <td>경조사비</td> <td>공직자등 본인, 직계존비속의 혼인 또는 장례</td> <td>5만 원 이하 (화환·조화 10만 원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기준(1인당)	음식물	원만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5만 원 이하	선물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	5만 원 이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및 농수산물상품권·농수산가공품상품권	15만 원 이하	경조사비	공직자등 본인, 직계존비속의 혼인 또는 장례	5만 원 이하 (화환·조화 10만 원 이하)
		구분	내용	기준(1인당)												
		음식물	원만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5만 원 이하												
		선물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	5만 원 이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및 농수산물상품권·농수산가공품상품권	15만 원 이하												
경조사비	공직자등 본인, 직계존비속의 혼인 또는 장례	5만 원 이하 (화환·조화 10만 원 이하)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 원																

Self-Check 결과 이상 없음	<input type="checkbox"/>
---------------------	--------------------------

[첨부 2]. 공식적인 행사 관련 Self-Check List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음료, 교통비,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Self-Check List를 작성하여 기안 작성 시 첨부합니다.

■ Self-Check List 관련 개별판단 곤란 또는 「X」항목 발생 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구분	점검 (O/X)	기준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목적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과의 연관성이 있는가? - 초청기관의 공문, 공식 초청장 등이 존재하는가? · 참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의 불특정 및 차별 없는 개방되어 있는가? - 단, 참석자 특정 시 합리적인 사유 必 · 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되어 있는가? - 단, 비공개 행사 경우 합리적인 사유 必 · 내부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가 존재하는가?
2	금품 등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전원에게 금품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개인 또는 집단 한정하여 제공되지는 않는가? - 단, 수행 역할 등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등 제공 가능
3	제공되는 금품등이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할 것으로 인정되는가?



8.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는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기부 및 협찬의 투명성과 합리성 증진을 위하여 회사의 기부 및 협찬 집행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① 기부 및 협찬의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공직자들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② “공직자들”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정의에 따른다.
- ③ “기부”란 회사가 자선적, 공익적 목적에 기초하여 회사 이외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물품,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④ “협찬”이란 후원, 지원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 ⑤ “주관부서”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일반원칙

- ①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 자선적, 공익적 목적에서만 기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선적, 공익적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일회성 또는 단순 친목행사로 지원효과가 낮은 사업
 2. 개인 및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영리성 사업
 3.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
- ③ 회사는 경영상 판단과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제4조에 정한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확인 후 기부·협찬을 검토한다.

제4조 기부 및 협찬 집행 절차

- ① 공직자 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협찬을 요청받은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내 전결규정에 따른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고 이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 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협찬을 요청받은 공문 담당자가 작성한 ‘기부 및 협찬 Self-Check List’
- ②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집행된 경우 해당부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집행에 대한 결과를 사내 전결규정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결재 승인을 통해 이를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부·협찬 집행 담당 직원은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기부·협찬 집행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 ④ 주관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부금 또는 협찬금의 집행을 중지·보류할 수 있다.

제5조 문서 보관

기부·협찬금 해당부서는 기안문, 계약서,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한 제반 문서 자료를 기부금 집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2021. 9. 6.)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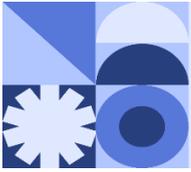
부칙(2022. 12. 26.)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1.)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기부 및 협찬 Self-Check List

공직자 등으로부터 기부 또는 협찬을 요청 받아 이를 진행하는 기안을 작성하는 경우 본 Self-Check List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합니다. 작성 곤란 또는 문의사항 발생 시 주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구분		점검 사항	점검(0/X)	참고
기부	실체적 요건	해당 사회공헌사업의 추진 목적, 요청받은 경위, 상대방의 집행 계획 등에 비추어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항목의 점검 결과가 「X」인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임직원이 최근3년 이내에 청탁금지법 및 뇌물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지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로 판단합니다. 해당 항목의 점검 결과가 「0」인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필요합니다.
	절차적 요건	상대방과 기부 또는 협찬에 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공식 공문을 수신하였는가?		해당 항목의 점검 결과가 「X」인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찬	반대급부의 적정성	협찬의 경우,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반대급부)가 존재하고 객관적 가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협찬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점검하며, 점검 결과가 「X」인 경우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9.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본 광고 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콜마홀딩스(이하 “회사”)가 시행하는 광고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광고”란 회사가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 ② “홍보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의미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6.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8. 위 1호에서 7호까지와 유사한 국내외의 매체
- ③ “언론사 등”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방송 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④ “주관부서”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광고비 산정 원칙

임직원은 홍보매체에 대한 광고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이에 상응하는 광고비를 책정할 수 있다.

1. 인쇄매체의 발행부수, 유가부수, 예비공사 자료 등(사단법인 한국에이비시협회의 부수 공사 조사)
2. 방송매체의 시청률, 청취율 등
3. 인터넷매체의 방문자 수, 이용횟수 등
4. 옥외매체 자료 등 기타 파악 가능한 자료

제4조 광고 대상 홍보매체 선정 원칙

임직원은 홍보매체를 선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를 의뢰하려는 홍보매체의 성격이 회사의 업무 및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2. 광고가 해당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언론사 등의 정식 내부 지침을 거쳐 집행되는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광고를 의뢰하려는 해당 홍보매체를 운영하는 언론사 등이 사실상 1인 또는 가족, 친족에 의하여 경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언론사 등의 직원으로부터 악의적인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광고를 요구 받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매체에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지급하는 광고비가 사실상 언론사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에게 지급될 것이 명백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매체에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광고의 정산

회사가 광고를 집행한 경우 해당부서 담당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첨부’의 ‘1. 정산서 양식’을 포함하여 “월간 광고비 집행 정산서”를 작성하고, ‘첨부’의 ‘2.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승인을 통해 이를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2021. 9. 6.)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6.) 이 가이드라인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4. 1.) 이 가이드라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월간 광고비 정산서 양식

1. 정산서 양식

순번	매체명	비용(만 원)	광고 내용
1	00일보	500	(지면 및 온라인 광고 스캔 등)
2			
3			

2. 전결 규정

기안	결재	부서
담당자	해당부서 임원	주관부서

[공통]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Ver. 2025

발행인 | Kolmar Holdings 자율준수관리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8길 61

대표번호 | 02-3459-5667

© 2025 Kolmar Holdings All rights reserved.